#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8.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於 레》

Ι.	조사개요	4
П.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4
III .	조사설계	18
IV.	자료수집	41
٧.	자료처리	57
VI.	통계추정 및 분석	60
VI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65
VIII .	통계기반 및 개선	85
IX.	참고문헌	88

#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통계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I. 조사개요

#### 1. 통계명

지역별 고용조사(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 3.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임시 조사직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와「인터넷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응답자기입」방법 병행

###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통계청/고용통계과

###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반기(4월, 10월)

○ 공표주기 : 연간 7회(2월, 4월, 6월, 10월, 11월, 12월)

 구분	조사	보도자료 및 KOSIS 수록	
イエ	실시	기본항목	부가항목
상반기	4월	①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8월) ①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②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0월) ② 자녀별 여성의 고용특성(12월)	
하반기 10월 ①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익년 2월) ① 맞벌이 가 ②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익년 4월) (익년 6월)			

#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 일반사항

- 본 조사는 조사기획 및 준비, 조사표설계, 조사원채용, 조사원교육, 조사실시, 자료처리 및 공표 순으로 진행
  - 조사기획 단계부터 최종 조사결과 공표까지는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 주요업무 추진 일정

<표 I \_1>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업 무	म उ
2~3월	• 나라통계시스템 개선	고용통계과 및
	• 조사구 적격심사 및 요도보완	지방청(사무소)
	• 조사직원 채용	
(4.13.까지)	• 조사적된 제공 - 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보조원	각 지방청(사무소)
(1.15.7)	2 100/1/2 10/11/220	
2.20	- 77Fl 7040l	트레 베디(테크)
3.29.	● 교관단 교육(1일)	통계센터(대전)
Ŷ		
116 120	• 조사원 등 교육(기간중 1일)	조사관리자,조사원,
4.16.~4.20.	- 지방청(사무소) 자체 전달교육	업무보조원 등
<u>Û</u>	* 조사표 및 조사필수품 등 배부	
<u> </u>	● 준비조사 : 4.22.	
4.00 5.0	<ul><li>보조사</li></ul>	기 기비리(기 [ 7 ]
4.22. ~ 5.9.	- 인터넷조사 : 4.23.~4.27.(5일)	각 지방청(사무소)
	- 면접조사 : 4.23.~5. 9.(기간중 16일)	
Û		
5.14.~5.31.	•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각 지방청(사무소)
<u>Û</u>		, ,
	• 본청 내용검토(산업·직업분류 포함) 및 수준분석	
6~8월	- 산업·직업 세분류 본청 내검요원 검토	고용통계과
<u>Û</u>		
8월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고용통계과
	· 고개일의 답게 못 한다	工 0 0 7 1 円
<u> </u>		
8월말	• '18년 상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공표	고용통계과
<u>Û</u>		
·		- 0 F -11 -1
10월말	• 18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공표	고용통계과
Û		
   11월말	• '18년 상반기 부가조사항목(경력단절여성 현황)	고용통계과
	결과 공표	3 0 0 / 11 - 1
<u> </u>	• /1011 XLHL의 보기크기취묘/키니버 시끄시	
12월초	• '18년 상반기 부가조사항목(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결과 공표	고용통계과
	上 6시파) 연기 6파	

#### 7. 조사연혁

#### □ 작성배경

- 2008년 경제·사회정책 및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지자체 및 경제권역별 고용통계 인프라 구축」T/F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시군구 고용통계 작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표본규모 6만 가구의 인력실태조사를 17만 6천 가구의 지역별 고용조사로 변경하고 2008년 10월에 제 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 한편, 감사원, 국가통계위원회, 국회 예산심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직업별고용구조 조사,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전주시, 창원시, 군산시)의 고용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세 개가 동일한 모수에 대해 다른 통계량을 생산하고 있어, 통계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및 인력·예산 절감을 위해 2010년 9월에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통계를 지 역별고용조사로 통합하였다.

#### □ 조사이력

- 2008. 10월 : 제1회 시군구고용통계조사 실시 ※ '지역별고용조사'로 명칭변경(2008. 10. 27.)
- 2009. 10월 : 제2회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2010. 9월 : 제3회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2010. 12월 : 제4회 2010년 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분기조사 전환)
- 2011년~2012년 : 분기별로 연 4회 실시(제5회~제12회)
- 2013년~2017년 : 반기별(4월, 10월)로 연 2회 실시(제13회~제22회)

#### □ 통계변경

- 2009년 9월
  - 희망산업, 희망직업의 조사대상 확대: 실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희망소득의 질의 내용 변경: '월평균 임금수준'→'월평균 최소임금'
  - 직업교육훈련 참여여부의 조사기준기간 변경: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매년 1년간
- 2010년 9월
  - 항목추가: '현 직업 총근무년 수' 추가
  - 항목보완: 고등학교 계열(3개→6개), 전문대 이상(전문학과 추가), 희망직업(5개 분류 →10개 분류), 고용계약기간(1개월~1년미만→1개월~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 조사시기 변경: 10월→9월(※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실시로 변경)
- 2010년 11월
  -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작성주기 변경: 연간→분기
  - 항목변경: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세부내용 32개 항목→31개 항목('현 직업 총 근무년수' 제외)

### ○ 2011년 3월

- 항목변경: 희망직업(4개→1개), 직장 특성(9개→10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희망직업 (4→1)	①취업희망여부 ②희망직업 ③희망종사상지위 ④희망최소임금	①시간제근로희망 여부
직장특성 (9→10)	①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이직사유 ③산업 ④직업 ⑤종사상지위 ⑥근속기간 ⑦월평균임금 ⑧고용형태 <u>⑨교육훈련여부</u>	①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이직사유 ③산업 ④직업 ⑤종사상지위 ⑥근속기간 ⑦월평균임금 ⑧고용형태 <b>⑨유연근무제</b> 활용 현황 ⑩유연근무제 희망유형

#### ○ 2011년 6월

항목삭제(3개) 및 추가(5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삭제	①유연근무제 활용현황 ②유연근무제 희망유형, ③시간제근로 희망여부	-	
항목추가	-	①이직사유(경력단절사유) ②경력단절 전 재직기간 ③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여 부 ④비동거배우자의 경활상태 ⑤배우자 의 주당 근로시간	

# ○ 2011년 9월

항목삭제(5개) 및 추가(4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이직사유(경력단절사유) ②경력단절 전		
첫 무 사 게	재직기간 ③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		
항목삭제	여부 ④비동거배우자의 경활상태 ⑤배우	-	
	자의 주당 근로시간		
		①녹색일자리여부 ②희망산업, 희망직업,	
항목추가	-	희망종사상지위 ③희망최소임금 ④현직업	
		총 근무년수	

### ○ 2011년 12월

- 항목삭제(5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녹색일자리여부 ②희망산업, 희망직업,	
** E 11 .31	희망종사상지위 ③희망최소임금 ④현직업	-
항목삭제	총 근무년수	
	①교육정도의 전공학과	-

# ○ 2011년 12월

- 항목추가(부가항목 1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추가	-	①녹색일자리여부	

#### ○ 2012년 6월월

- 항목추가(부가항목 1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추가	<del>-</del>	①사회보험 가입여부	

#### ○ 2013년 3월

- 주기변경: 분기(연 4회) → 반기(연 2회)

- 표본확대: 174,000가구 → 199,000가구

- 공표방법: 보고서, 보도자료, KOSIS  $\rightarrow$  보도자료, KOSIS

- 부가항목 조사주기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경력단절여성(2분기)	
	▶ 사회보험가입(2분기)	▶ 상반기 조사 실시
조사주기	▶ 직업교육훈련(4분기)	
변경	▶ 유연근무제(1분기)	
	▶ 맞벌이가구(2분기)	▶ 하반기 조사 실시
	▶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3분기)	

#### ○ 2013년 9월

- 교육정도의 고등학교 계열 축소: 6개 → 3개

- 표본확대: 174,000가구 → 199,000가구

- 공표방법: 보고서, 보도자료, KOSIS → 보도자료, KOSIS

- 부가항목 조사주기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변경	①출퇴근시간 자율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③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시차출퇴근제 ②선택적 근무시간제 ③탄력적 근로제	
중지	①희망산업 ②희망직업 ③희망종사상지 위 ④희망월평균임금	- (※인력수급전망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의견을 반영, 일몰제 적용)	

#### ○ 2013년 10월

- (항목추가) 기존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총괄표 고용률 항목에 15~64세 고용률 항목 추가
- **(통계표추가)** 전국 성별 산업별 직업 취업자, 전국 성별 전공계열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전국 성별 연령별 전공계열별 취업자 및 고용률

#### ○ 2014년 3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항목 삭제	- 그만 둔 직장의 재직기간 - 총직업근무년수	- 삭제	- 활용도 미비(일몰제 적용)
항목 추가		-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여부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여성가족부)
항목 변경		- 경력단절여성 조사 항목에 <u>"<b>가족돌봄"</b></u> 보기 문항 추가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여성가족부)
0 7 1270	-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 교육(훈련)은 무엇입니까?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은 무 엇입니까?	-직업교육훈련 효과 등 파악
조사주기 변경 (사회보험가입현황)	- 연 2회(상/하반기)	- 연 1회(상반기)	-1회 조사로 조사목적 달성

# ○ 2014년 4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시도/구직산업/구직직업/구직종사지위별실업자	
공표중지	- 시도/구직임금/이직이유/구직기간별실업자	통계표 공표중지
0 77 9 71	- 직업교육경험, 경제활동상태별 15세 이상 인구	2/17 9 7 8 7/1
	- 전국 종사상지위/동일직업 근무년수별 취업자	
		고등학교계열 6-8계열로 축소(일반, 상업,
	- 전국 산업(중분류)/교육정도/전공계열별 취업자(고졸이상)	농림어업, 공업, 기타전문계, 기타고 →
항목변경		인문계, 예술·체육계, 상 농공수산계열)
	- 전국 직업(중분류)/교육정도/전공계열별 취업자(고졸이	산업·직업 대분류수준으로 축소 제공
	상)	선표 여러 대한 파기 판으로 국소 제 8
	- 시군(9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남자, 여자 15~64세 고용률 추가
항목추가	- 시군(9개도)/성/연령별 취업자	"시군(9개도)/성/연령별 취업자 및
	- 시교(기계 <del>고</del> )/ 정/ 현정된 게임사 	고용률"로 변경

# ○ 2015년 3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표본규모	- 9,949조사구의 약 199,000가구	- 9,958조사구의 약199,000가구 ※공표수준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광역시 표본을 일부 축소하고, '10년 인총대비 10%이상 인구가 증가하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일부 시 지역 표본 확대

# - 조사항목 조정

변경전			변경후	rij 거 z] ㅇ
번호	항목	번호	항목	변경사유
표지 문구	응답자 및 조사원 <b>연락사항</b>	표지	응답자 및 조사원 <b>연락처</b>	의미의 명확화
표지 문구	<b>공익근무요원</b> 등의 가구원	표지	<b>사회복무요원</b> 등의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을 매 문항마다 명시	공통	6번 다음에 1회만 명시 후 각 문항 에서는 삭제	조사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설문 문항 배열	비구성	공통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 경제활동인구 등)별로 조사표 구성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구조 일치
7	조사대상주간의 주된 활동	28	①27번으로 이동 ②보기 재구성/비경제활동인구만 응답 ■일하였음, ②일시휴직, ③구직 활동, ④발령대기( ) 15결 혼준비 삭제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배치 및 문구 일치
8	수입있는 일	7	항목 분리 및 질문 문구 변경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관련부처 및 전 문가회의시 요구 사항 반영
		8	항목 분리 및 질문 문구 변경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변경전 변경후 내구기 0			2-2.2.6
번호	항목	번호	항목	변경사유
9	▶ 질문 문구 변경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대상주간~" ▶ 보기 재구성 "⑨ -1. 일을 하지 않은 이유~" • ⑬ 교육 • ⑭ 육아, 가족적 이유	9	▶ 질문 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는~" ▶ 보기 재구성  -"⑨ -1.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  • ③ 교육·훈련  •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0	4주간 구직여부	20	①문구 추가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 았음'에 해당함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1	①질문 문구 등 변경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 (부업)을 한 적이~"	10	①질문 문구 등 변경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2	①문구 변경 • "주업" • "부업" • "18시간미만무급가족종사자"	11	①문구 변경 • "주된 일" • "다른 일" •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3	①문구 변경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21	①문구 변경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 작할 수 있었습니까?"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4	①문구 변경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③보기문항 변경 • ⑪공공 직업알선기관 • ⑫민간 직업알선기관 • ⑬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인터넷 등) • 웹시험응시 • ⑫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민간알선기관)	22	①문구 변경 "주로 어떤 방법과 경로로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②기존 구직경로와 구직방법 순서 변경 ③보기문항 변경 • ①공공 취업알선기관 • 민간 취업알선기관 • 민간 취업알선기관 • ①시험접수, 시험응시 • ②구직등록, 구직응모 • ③ 사업체에 문의, 방문, 원서제출 ④ 22·1 "⑤ 친척, 친구, 동료에게 소개 부탁"보기 신규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5 (구직 기간)	①문구 변경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23	①문구 변경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 을 얼마 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6	①문구 변경 •"①예", "②아니오"	24	①문구 변경 ・"①원하였음", "②원하지 않았음" ②『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하위 항목으로 분류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8	①문구 변경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26	①문구 변경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 까?"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9 (이직 시기)	①항목구조 재구성	28	①항목구조 재구성 이중질문을 단일 질문 2개로 구성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조사항목의 명 확성 제고

	변경전 변경후			w
번호	항목	번호	항목	변경사유
20 (이직 사유)	①질문, 보기 문구 변경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 가족 관련 이유 ・"가족돌봄"	29	①질문, 보기 문구 변경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 는 무엇입니까?" ・ ■개인, 가족적 이유 ・"가족돌봄(육아제외)"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 관련부처 및 전문가회의시 요구사항 반영
21 (산업)	①문구 변경 •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12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 주간에 어디에서 일  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①문구 변경 •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30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 주간에 어디에서 일  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경제활동인구조
22 (직업)	①문구 변경 •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일의 종류	13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내가 한 일	사와 문구 일치 - 항목 분리(취업 자와 실업자·
	①문구 변경 •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일의 종류	31	①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내가 한 일	비경제활동인구)
23	①문구 변경 •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어떠했습니까?"	14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 위는 무엇입니까?"	
	①문구 변경 •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어떠했습니까?"	32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 위는 무엇입니까?"	
27	①문구 변경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정했음 ・정하지 않았음(정년포함) ・고용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7	① 질문 문구 변경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29	교육훈련1		삭제	- 일몰제 적용
30	교육훈련2		삭제	- 일몰제 적용
기타 (종사 자규 모)	① 항목 배치 변경		①항목 배치 변경      산업 문항 다음으로 이동 ②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전 직장(시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배치 및 문구 일치
기타	①조사항목 순서 변경 ■3개월평균임금→근로기간 →사회보험		①조사항목 순서 변경  - 근로기간사회보험3개월평균임금	- 조사의 효율성

# ○ 2015년 9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인적사항 등 31개 항목 <sup>*</sup>
	- 인적시항 등 34개 항목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이동
	19. 시간제근로(평소 주당 30시간 이하) 일자리가 있다면 일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1 예 2 아니오	경제활동인구조사 49번 항목
	│ 19-1. 전일제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시간제 일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서 조사
	① 예 ② 아니오	
	28. 현재 재직중인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_ ' '	
작성항목	L▶28-1. (복수응답 가능) 어떤 형태의 유연근무제를활용하고 있습니까?	(삭제)
(결과표)	# 한민구세물활동야고 쳤습니까? ( ), (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5,1,17)		태별 부가조사 68번 항목
	② 시차출퇴근제	에서 조사
	③ 선택적 근무시간제	
	④ 재택 및 원격근무제 → <sup>질문끝</sup>	
	<ul><li>⑤ 탄력적 근무제</li><li>⑥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li></ul>	
	29. (복수응답 가능) 향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면 어떤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습니까? ( ),	
	( )	(삭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1 시간제근로제 5 탄력적 근무제	태별 부가조사 69번 항목
	2 시차출퇴근제 6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에서 조사
	3 선택적 근무시간제 7 활용하고 싶지 않음	
	4 재택 및 원격근무제	

### ○ 2016년 8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조사항목	31개 항목	34개 항목 (신규3, 변경1) (연간 고용이동성 등 추가)
결과표		결과표 추가 (1인가구의 규모 및 고용특성, 맞벌이가구)

# ○ 2017년 3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조사대상	전 국 10,021조사구의	(4월) 전국 10,067조사구의 약 20만 1천가구	세종특별자치시 신표본 추가 병행조사
327(4).8	약 20만가구	(10월) 전국 10,027조사구의 약 20만 1천가구	표본개편
		기구원명부에 교육정도 신설	
조사항목· 결과표		맞벌이가구 항목(21항) * 신설 ⑧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 * 문구수정 ⑥ 자녀의 취업준비 때문에	관련 정책부처의 일·가 정양립정책 지원

#### ○ 2017년 9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조사대상	▶ 모집단. 2010년인구총조사 ▶ 전국 10,067개 조사구의 약 20만 1천 가구	▶ 모집단: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 표본조사) ▶ 전국 10,063개 조사구의 약 20 만 1천 가구	2015년 인구총조사를 반영하여 표본개편
결과표	추가	자녀유무별 고용특성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활성화정책 지원

### □ 표본개편

- 2008년
  - 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 규모: 약 176,000가구(경제활동인구조사 32,000가구, 지역별 별도표본 144,000가구)
- 2012년 2월
  - 추출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규모: 약 174,000가구(경제활동인구조사 32,000가구, 지역별 별도표본 142,000가구)
- 2017년 10월
  - 추출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및 표본조사 결과
  - 규모: 약 201,000가구(경제활동인구조사 34,000가구, 지역별 별도표본 167,000가구)

#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1. 통계의 작성목적

#### □ 조사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 제공

#### □ 활용분야

- 고용현황 관리 및 고용정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 고용성과 평가 기준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일·가정 양립지표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OECD 국제자료 비교
- 고용현황, 노동시장, 일자리창출 등 노동시장 분석·연구, 산업·직업 연구 등

#### □ 국내·외 통계 간 사전 검토한 사항

- 국내 주요 노동력조사
  - 지역별고용조사 vs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주기 (조사기준)	반기(1차: 4월15일, 2차: 10월15일)	매월(15일)
조사	1차: 4월, 2차: 10월	매월
결과공표	2월~12월(6회)	매월, 연간보고서
조사단위	가구	가구
조사방법	면접조사, CASI 병행	면접조사, CATI, CASI 병행
조사담당	임시조사원	조사직원
조사대상	표본가구(201,000개)내 상주하는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표본가구(34,000개)내 상주하는 15세이상 임금근로자
공표단위	전국, 시·도, 시·군	전국, 시·도
조사항목	32~34개 항목 (부가항목 9개 항목은 경제활동인구조사항목과 미일치)	48개 항목

### - 지역별고용조사 vs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이만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주기 (조사기준)	반기(1차: 4월15일, 2차: 10월15일)	매년(5월 15일)
조사	1차: 4월, 2차: 10월	5월
결과공표	2월~12월(6회)	연간(11월)
조사단위	가구	이민자(외국인+귀화자) 개인
조사방법	조사원 면접조사, CASI 병행	조사원 직원 면접조사
조사담당	임시 조사원	임시 조사원
조사대상	표본가구(201,000개)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만 15세 이상 18,145명(외국인 14,145명, 귀화자 4,000명)
조사항목	32~34개 항목	129개 항목

### - 지역별고용조사 vs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기준	1차: 4월15일, 2차: 10월15일	6월(사업체 급여 계산기간)
조사	1차: 4월, 2차: 10월	7월~9월
결과공표	2월~12월(6회)	보도자료 익년 4월(보고서 6월)
조사단위	가구	사업체
조사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병행
조사대상	표본가구(199,000개)내 상주하는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부문의 전산업 중 표본사업체(약 32,000개)
·제외	군인, 재소자 등만 제외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 군 · 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 · 국제 및 외국기관 · 개인운영 농림어업체 · 가사서비스업 ·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인부 ·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노 점상, 포장마차 등)
장점	거의 모든 사업장과 직업이 대상	회계장부에 기록된 형태로 조사됨
단점	대리응답, 반올림 응답, 기억에 의한 응답오차가 있음	· 공공기관·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 인부 등이 조사에서 미파악 · 복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각각의 사업체에서 중복 계산됨

#### ○ OECD 조사기준

-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 기준 고용률, 청년층(만 15세~24세) 고용률 등
- OECD 조사기준 통계 제공및 ILO 노동력조사 Resolution 조사에 반영
  -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원칙, 개념과 기준, 조사방법 등

#### ○ 국외 통계 비교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조사명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Labour Force Survey(LFS)	Labor Force Survey(LFS)	Employment Status Survey	ILO labour m a r k e t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조사주기	월간조사	월간조사	월간조사	월간조사 (분기별 조사)	5년 주기	매월
조사기관	U.S. Census Bureau	Statistics Canada	Office for N a t i o n a l Statistics(ONS)	총무성 통계 국	Federal Statistical Offi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조사대상	가구의모든가구원	가구의만15세 이상가구원	가구의만16세 이상가구원	가구의만15세 이상가구원	가구의만15 세~74세가구원	가구의만15세 이상가구원
조사방법	표본조사 보조정보 사용 (실업보험자료)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서면조사표 및 OMR조사표/표 본조사, 면접타계식과 자계식 병행)
주요연혁	1942년 시작	2005년 시작	1945년 시작	1973년 시작	1956년(3년 주기 조사 시작)	1957년 시작 2005년 the Micro census Law의 개정.
공표방법	매월 보고서 발간	규모에 따라 매년, 매3년, 매5년, Census Bureau에서 공개	매월 Statistics Canada's Website	매월 보고서 발간 (3개월 조사 후 1.5개월 후 발표)	익월 말일, 보도자료 및 테이블 홈페이지 게시	매월 보도자료 및 테이블 홈페이지 게시

#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 연구기관 등

- (고용정보원) 전공계열 학과 자료 인력수급전망에 활용, 최종학력 졸업년도 구직활동 기간 및 단기 실업자에 대한 판단 근거
- (OECD) 국제자료 비교
- **(한국여성정책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취업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공·학과코드 정보, 산업·직업 세분류 활용 직업 연구
  - 예술인 종사자 규모(중분류/소분류)
- (국내·외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고용현황 자료 등

# 3. 이용자 의견수렴

###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 항목 개편 관련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고용통계과 -37(2016.1.7.))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 2017년 고용조사 관련 의견수렴 실시(고용통계과-2570(2016.10.28.))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평생규육진흥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령사회고용진흥원
- 2017년 지역별고용조사 의견수렴 실시(고용통계과-2588(2016.10.31.))
  - 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 9개 시도)
- 2018년 고용조사 관련 의견수렴 실시(고용통계과-2630(2017.11.23.))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국가평생규육진흥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령사회고용진흥원
-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의견수렴 실시(고용통계과-2640(2017.11.24.))
  - 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 9개 시도)
-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의견수렴 실시(고용통계과-2641(2017.11.24.))
  - 지방자치단체(시·군)
- 2018년 고용통계 개선안 의견수렴(고용통계과-305(2018.2.8.))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천대학교

# □ 전문가 회의(이용자 협의회)

-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관련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결과 보고(고용통계과 -255(2016.2.3.))
  - 참석자: 13명(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8명 및 고용통계과장 외 4명)
- 2017년 고용조사 개선을 위한 이용자 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고용통계과-2875(2016.12.6.))
  - 참석자: 14명(연구기관 5명, 관련부처 4명, 고용통계과장 등 5명)
- 2018년 고용조사 개선을 위한 이용자협의체 회의결과 보고(메모보고-2018..1.26.)
  - 참석자: 17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1명 및 고용통계과장 외6명)

# Ⅲ. 조사설계

#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 1-1 조사 항목

#### □ 조사항목 체계

- 조사항목은 조사시점(상반기·하반기)에 따라 구분
  - 조사표 종류는 상·하반기 각각 1인용, 3인용, 간지용,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용 등 4종과 한국어와 외국어 5종으로 구분

#### <표 3-1> 상반기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총 32개)*		
인적사항(6개)	①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 교육정도 ⑥ 혼인상태		
일에 관한 사항(13개)	① 수입있는 일 여부 ② 무급가족 일 여부 ③ 일시휴직 여부 ④ 다른 일 여부 ⑤ 취업시간 ⑥ 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⑦ 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⑧ 종사상지위 ⑨ 현 직장 취업시기 ⑩ 취업여성의 경력단절경험여부 ⑪ 고용계약기간 ⑫ 사회보험가입여부 ⑬ 3개월 평균임금		
구직에 관한 사항(4개)	① 구직활동여부 ② 취업가능성 ③ 구직방법 및 경로 ④ 구직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4개)	① 취업희망여부 ② 비구직 사유 ③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④ 주된 활동상태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5개)	①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 이직사유 ③ 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④ 직업(한 일, 일한 부서명) ⑤ 종사상지위		

<sup>\*</sup>부가항목인 『경력단절기간』 및 『경력단절사유』 는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와 이직사유 항목을 통하여 조사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항목은 일에 관한 사항과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에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

#### <표 3-2> 하반기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총 34개)*		
인적사항(6개)	①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교육정도 (학력 <sup>1)</sup> 및 계열, 수학여부, 전공학과 <sup>2)</sup> , 졸업연도 <sup>2)</sup> ) ⑥ 혼인상태		
일에 관한 사항(15개)	①수입있는 일 여부 ②무급가족 일 여부 ③일시휴직 여부 ④다른 일 여부 ⑤주당취업시간 ⑥ 산업(주된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⑦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⑧현 직장 취업시 기 ⑨종사상지위 ⑩고용계약기간 ⑪3개월 평균임금 ⑫이직횟수 및 이전직장소재지 ③이직사유 ⑭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주당취업시간 ⑮비동거사유		
구직에 관한 사항(4개)	① 구직활동여부 ② 취업가능성 ③ 구직방법 및 경로 ④ 구직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4개)	① 취업희망여부 ② 비구직 사유 ③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④ 주된 활동상태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5개)	①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 이직사유 ③ 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④ 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⑤ 종사상지위		

1) '17년 하반기부터 15세 미만 가구원의 학력 신규조사 (※15세 미만 가구원은 조사제외자로서 조사표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조사표표지 가구원명부 란에서 학력항목 조사) 2) '전공학과' 및 '졸업연도'는 교육정도 항목에서 매년 하반기에만 조사

#### □ 주요 개념 정의

- 취업자
  -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②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휴가,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실업자로 간주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②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 ③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함
-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현물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
  - 비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
- 산업 및 직업분류
  - 산업분류 : 취업자 또는 1년 전 취업자였던 사람이 근무하던 사업체의 주된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 직업분류 : 취업자 또는 1년 전 취업자였던 사람이 가졌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수 행하는 일의 형태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하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의해 구분

#### □ 항목 개념 정의

- 가구주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
- 혼인상태

-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도 포함)
- 사별 :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 :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직장
  - 직장은 매주 또는 매월 정규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함다만, 계절적인 근로자의 경우 조사대상주간이 해당계절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
- 주업과 부업
  - 주업(주된 일) :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일로서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
  - 부업(다른 일) : 주업 이외에 따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 취업시간
  - 수입있는 일을 위해 근로한 시간
-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또는 입양에 의한 가족관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이직횟수
  - 이직 횟수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는 고용주를 바꾼 횟수를, 자영자나 고용주는 사업장(체)의 업종을 바꾼 횟수를 의미
- 19 이전 직장을 그만 둔 사유
  -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 이전 직장(일)의 수입·보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수입)을 얻기 위하여 옮긴 경우
    - 이전 직장(일)의 작업시간이 너무 많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옮긴 경우
    - 이전 직장(일)이 너무 위험해서 옮긴 경우
  -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 자신의 교육 수준, 전공분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 등에 알맞은 일이 아니어서 옮긴 경우
  -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 이전 직장(일)이 발전 가능성이 없거나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옮긴 경우
    - 이전 직장(일)의 사업이 부진하여 스스로 그만두고 옮긴 경우
  - '개인·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결혼, 학업 계속 등)'
  -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

- 결혼, 임신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병간호) 등
-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군복무, 복학·진학 등으로 인한 학업 계속
- '가사·육아 '
-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 전)를 돌보기 위하여 직장(일)을 옮긴 경우
-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사를 돌보기 위해 직장(일)을 옮긴 경우
-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 창업 또는 사업체 인수를 통하여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 옮긴 경우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일)를 돕기 위해 옮긴 경우
-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의 완료 등으로 그만 둔 경우 (예) 겨울 스키강사, 송이버섯 채취, 농사일의 완료, 단기사업의 완료
- '계약기간이 끝나서'
- 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자동적으로 직장(일)을 잃고 다른 일로 바꾼 경우
-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으로'
- 사업의 축소, 업무의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옮긴 경우
- 사업체 사정, 개인 과실, 기업 경영권 이전, 기업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옮긴 경우
-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직장(일)을 옮긴 경우
- '직장의 휴업, 폐업 '
  - 사업체의 부도(도산), 휴업,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사업이 끝났거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자동적으로 직장(일)을 잃고 다른 일로 바꾼 경우
- 19 구직방법 및 경로
  - '시험접수, 시험응시'
  - 구직을 위한 면접, 필기 등 시험 접수 또는 시험응시
  - '구직등록, 구직응모'
  - 공공/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등록, 응모
  - '사업체에 문의, 방문, 원서제출'
  -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문의, 원서제출
  - ' 자영업 준비'
    - 사업계획의 확정 및 자금 확보 후 사업장 물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취득준비, 물건 등을 구입하였거나 영업개시를 못하고, 허가신청 후 기다리는 경우도 포함
  - '친척, 친구, 동료에게 소개 부탁'
    - 친척, 친구, 이전 동료에게 취업이나 취업 소개를 부탁 (주된 것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공공 취업알선기관'
    -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워크넷

#### (Worknet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을 통한 구직

-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 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
- '민간 취업알선기관'
  -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구직
    -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 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
-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
  - 신문방송,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구직
- '학교, 학원'
- 학교, 학원 등의 추천, 소개, 의뢰에 의한 구직
- '친척, 친구, 동료'
- 친구, 친지, 동료를 통한 구직

### □ 주요 개념에 대한 국내·외 기준

#### ○ 국외 기준

#### <표 3-3> ILO vs 지역별고용조사

구분	ILO(국제노동기구)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의 범위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임금,이익)을 목적 으로 일을 한 경우 ※ 자가소비, 자원봉사 등은 제외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임금,이익)을 목적 으로 일을 한 경우 ※ 자가소비, 자원봉사 등은 제외
조사대상	•법률이나 의무교육 연령을 고려하여 하한 연령은 설정하되, 상한 연령은 정 하지 않음 ->만 15이상 인구	• 법률이나 의무교육 연령을 고려하여 하 한 연령은 설정하되, 상한 연령은 정하 지 않음 ->만 15이상 인구
무급가족 종사자	•동거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직장)에서 무급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동거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직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취업자	<ul> <li>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li> <li>조사대상기간 1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li> <li>종사자</li> <li>일시휴직자(복귀가 확실한 자)</li> </ul>	<ul> <li>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li> <li>조사대상기간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li> <li>일시휴직자(복귀가 확실한 자)</li> </ul>
실업자	<ul> <li>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li> <li>지난 1개월 또는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고</li> <li>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li> </ul>	<ul> <li>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li> <li>지난 1개월 또는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고</li> <li>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li> </ul>
비경제활 동인구	▪만 15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만 15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구분	ILO(국제노동기구)	지역별고용조사
	• (1시간 기준) 조사대상주간에 한 시간	• (1시간 기준) 조사대상주간에 한 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일정량의 일을 한	이상 일한 경우에는 일정량의 일을 한
	것으로 간주	것으로 간주
	•(짧은 대상기간) 취업과 실업의 변화를	•(짧은 대상기간) 취업과 실업의 변화를
	자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자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주간○르 짧게(1일 또는 1주)해야 한다	주간○르 짧게(1일 또는 1주)해야 한다
	는 원칙	는 원칙
조사기준	•(활동성 원칙) 노동력 조사에서 지표의	•(활동성 원칙) 노동력 조사에서 지표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실제 활동상태에	객관적 측정을 위해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노동력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따라 노동력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우선성 규칙) 취업, 실업, 비경 중 복	•(우선성 규칙) 취업, 실업, 비경 중 복
	수의 활동상태에 있을 경우 취업은 실	수의 활동상태에 있을 경우 취업은 실
	업과 비경에 우선하고, 실업은 비경에	업과 비경에 우선하고, 실업은 비경에
	우선함)	우선함)

# ○ 국내 기준

# <표 3-4> 지역별고용조사 v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기준	1차: 4월15일, 2차: 10월15일	6월(사업체 급여 계산기간)	
조사	1차: 4월, 2차: 10월	7월~9월	
조사단위	가구	사업체	
조사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병행	
조사대상	표본가구(199,000개)내 상주하는 15세이상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부문의 전산업 중 표본사업체(약 32,000개)	
• 제외	군인, 재소자 등만 제외	<ul> <li>·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li> <li>·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li> <li>·국제 및 외국기관</li> <li>·개인운영 농림어업체</li> <li>·가사서비스업</li> <li>·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인부</li> <li>·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노점 상, 포장마차 등)</li> </ul>	

# 1-2 적용 분류체계

# □ 보고서 집계에 적용하는 항목 분류 체계

# ○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총괄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성별/연령별/종사상지
	경제활동참가율 (%)	위별
	고용률 (%)	
	15~64세 고용률 (%)	
	실업률 (%)	
	- 성별(남자)	
	- 성별(여자)	행정구역별/
비경제활동인구	- 연령별(15~29세)	성별/연령별/활동상태
	- 연령별(30~49세)	별/교육정도별
	- 연령별(50세 이상)	
	취업자 (천명)	
타지역 통근 취업자	거주지내 통근 취업자 (천명)	행정구역별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천명)	

#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연령(15~29세)	
	연령(30~39세)	
	연령(40~49세)	
	연령(50~59세)	
지어 조비로	연령(60세 이상)	
산업 중분류	교육정도(중졸이하)	취업자수
(※10차 표준산업분류)	교육정도(고졸)	
	교육정도(대졸이상)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비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연령(15~29세)	
	연령(30~39세)	
	연령(40~49세)	
	연령(50~59세)	
직업 중분류	연령(60세 이상)	
	교육정도(중졸이하)	취업자수
(※7차 표준산업분류)	교육정도(고졸)	
	교육정도(대졸이상)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비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산업 중분류	200~300만원 미만	- 전국
(※10차 표준산업분류)	300~400만원 미만	[ 전기
	400~500만원 미만	-
	·	
	500만원 이상	
	계	
	100만원 미만	
직업 중분류	100~200만원 미만	
(※7차 표준산업분류)	200~300만원 미만	전국
(%/시 요단건답단표)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산업 소분류	남	전국
(※10차 표준산업분류)	여	선 수
직업 소분류	남	전국
(※7차 표준산업분류)	여	선 수
	취업자 (천명)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_
	 -인문계열 -예술체육계열	
		-
	 전문대	
	전문대 졸업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교육(사범)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산업 중분류	-의약계열	
	대학교 대학교 졸업	전국
(※10차 표준산업분류)		
	-예술체육계열	
	-교육(사범)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대학원(석사박사)	
	대학원(석사이상)졸업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
		-
	-교육(자점)세월 -자연계열	-
	-공학계열 -공학계열	-
	-의약계열	1

	취업자 (천명)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인문계열	
	-예술체육계열	_
	-상농공수산계열 등	_
	전문대 기묘제 중심	_
	전문대 졸업	
	-인문사회계열	_
	-예술체육계열	_
	-교육(사범)계열	_
	-자연계열 -공학계열	_
	-등막게 털 -의약계열	_
산업 중분류		-
	대학교 졸업	전국
(※10차 표준산업분류)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교육(사범)계열	_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대학원(석사박사)	
	대학원(석사이상)졸업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교육(사범)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계	
	100만원 미만	
기신 조비로	100~200만원 미만	
직업 중분류	<u> </u>	취업자수
(※7차 표준산업분류)	200~300만원 미만	_
	300~400만원 미만	_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_
산업 소분류	500한원 의경 남	
	여	행정구역별
(※10차 표준산업분류)	· ·	
직업 소분류	남	취업자수
(※7차 표준산업분류)	여	1.12

# ○ 맞벌이 가구 현황

	유배우가구 (천가구)	
	- 맞벌이가구 (천가구)	
유배우가구현황	- 맞벌이가구비율 (%)	전국
	- 비맞벌이가구 (천가구)	
	- 비맞벌이가구비율 (%)	

맞벌이 가구	유배우가구 (천가구) - 맞벌이가구 (천가구) - 맞벌이가구비율 (%)	성별/연령계충별/교육 정도별/산업별/직업별
	- 옷을 1/1 1 1 을 (///) 계	
	농림어업	
동거맞벌이 가의 동일산업	광·제조업	
비율	건설업	동일산업/동일산업비율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 □ 통계수집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

-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 및 공표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2008년~2016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2017년~)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2008년~2017년 상반기)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2017년 하반기~)
-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적용방법
  - 통계청 「산업 및 직업분류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내검·입력 요원이 해당 가구원의 각 산업 및 직업 건별로 내용을 조회하여 분류코드 적용
    - (1차)「산업 및 직업분류 자동화시스템」에서 조회된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일 적용사례 또는 한국표준산업 및 직업분류 코드집을 활용하여 재검색
    - (2차) 1차 지방청·사무소 입력 및 내검요원이 코딩한 산업·직업코드에 대해 본청에서는 전문 내검요원을 채용하여 코딩 결과에 대해 2차 내검 실시
    - 본청 내검요원에 의해 확인된 결과 중 내검 요원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본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수정
  - 「산업 및 직업분류 자동화시스템」은 지역별고용조사 입력시스템인 나라통계시스템에 연계 탑재되어 있음

# 1-3 조사표 구성

#### □ 내·외부 전문가 회의

-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회의 개최
  - 회의안건: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 관련 부가조사 항목 논의
  - 일 시: 2016 . 1 . 27 . (수) 14 : 00~17 : 00
  - 장 소: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11동) 106호 중회의실
  - 참석자: 13명(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8명 및 고용통계과장 외 4명)

- 2017년 고용조사 개선을 위한 이용자 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고용통계과-2875(2016.12.6.))
  - 일시 및 장소: '16.11.29.(화) 14:00~16:00, 세종청사 6동 중회의실-1
  - 참석자: 14명(연구기관 5명, 관련부처 4명, 고용통계과장 등 5명)
- 2018년 고용조사 개선을 위한 이용자협의체 회의결과 보고(메모보고-2018..1.26.)
  - **일시, 장소**: '18.1.19(금) 14:00~16:00, 세종청사 6동 중회의실1
  - 참석자: 17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1명 및 고용통계과장 외6명)

#### □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

-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응답자에게 조사협조문과 인터넷참여 안내문을 우편 발송
  - 조사협조문 및 인터넷참여 안내문에 포함된 내용
  - 조사명, 조사일정, 응답자협좌항, 조사협조감사인사, 조사기관 명시, 문의사항 연락처
  - 인터넷참여번호, 인터넷참여방법, 응답자 조사필수품 제공 관련 안내 등
- 조사표 구성
  - 1) 사전조사표에 포함된 항목
    - 조사명, 승인번호
    - 조사의 법적 근거, 응답자 비밀보호 정책
    - 조사목적
    - 조사기관 명시
    - 조사협조감사인사
    - 조사표 주요용어 정의 및 기준
- 2) CAPI 화면
  - 조사명
  - 참여번호, 비밀번호 입력안내

<그림 3-1> CAPI 입력화면 예시



####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 조사표 변경 절차 및 방법

- 변경 절차
  - (1차) 노동환경 및 국내·외 노동력조사 기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내부회의 및 의견 수렴으로 조사표 개선(안) 마련
  - (2차) 관계부처, 이용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안)에 대한 회의
  - (3차) 이용자 협의체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선(안)을 보완하고 이용자 의견수렴
  - 최종 개선(안) 확정
  - 조사표 개선(안) 승인 요청 및 통계청 홈페이지 고시

#### 1-5 조사표 변경이력

#### □ 문항 변경 및 숭인 이력

- 2009 9.22.(승인)
- 희망산업, 희망직업의 조사대상 확대: 실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희망소득의 질의 내용 변경: '월평균 임금수준'→'월평균 최소임금'
- 직업교육훈련 참여여부의 조사기준기간 변경: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매년 1년간
- 2010.9.13.(승인)
  - 항목추가: '현 직업 총근무년 수' 추가
  - 항목보완: 고등학교 계열(3개→6개), 전문대 이상(전문학과 추가), 희망직업(5개 분류 →10개 분류), 고용계약기간(1개월~1년미만→1개월~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 조사시기 변경: 10월→9월(※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실시로 변경)
- 2010.11.26.(승인)
  -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작성주기 변경: 연간→분기
  - 항목변경: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세부내용 32개 항목→31개 항목('현 직업 총 근무년수' 제외)
- 201.2.28.(승인)
  - 항목변경: 희망직업(4개→1개), 직장 특성(9개→10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희망직업	①취업희망여부 ②희망직업	①시간제근로희망 여부
(4→1)	③희망종사상지위 ④희망최소임금	
직장특성 (9→10)	①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이직사유 ③산업 ④직업 ⑤종사상지위 ⑥근속기간 ⑦월평균임금 ⑧고용형태 <u>⑨교육훈련여부</u>	①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이직사유 ③산업 ④직업 ⑤종사상지위 ⑥근속기간 ⑦월평균임금 ⑧고용형태 <b>⑨유연근무제</b> 활용 현황 ⑩유연근무제 희망유형

# ○ 2011.6.14(승인)

항목삭제(3개) 및 추가(5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 단 시나에	①유연근무제 활용현황 ②유연근무제 희망	
항목삭제	유형, ③시간제근로 희망여부	-
		①이직사유(경력단절사유) ②경력단절 전
치민호기		재직기간 ③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여
항목추가	-	부 ④비동거배우자의 경활상태 ⑤배우자
		의 주당 근로시간

# ○ 2011.9.7(승인)

항목삭제(5개) 및 추가(4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이직사유(경력단절사유) ②경력단절 전		
첫 무 사고기	재직기간 ③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		
항목삭제	여부 ④비동거배우자의 경활상태 ⑤배우	<del>-</del>	
	자의 주당 근로시간		
		①녹색일자리여부 ②희망산업, 희망직업,	
항목추가	-	희망종사상지위 ③희망최소임금 ④현직업	
		총 근무년수	

# ○ 2011.12.7(승인)

- 항목삭제(5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녹색일자리여부 ②희망산업, 희망직업,	
-1 T 11 .11	희망종사상지위 ③희망최소임금 ④현직업	-
항목삭제	총 근무년수	
	①교육정도의 전공학과	-

# - 항목추가(부가항목 1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추7	<u>-</u>	①녹색일자리여부

# ○ 2012.6.1.(승인)

- 항목추가(부가항목 1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추가	-	①사회보험 가입여부

### ○ 2013.9.26.(승인)

- 부가항목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출퇴근시간 자율	①시차출퇴근제	
항목변경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②선택적 근무시간제	
	③탄력적 근로시간제	③탄력적 근로제	
중지	①희망산업 ②희망직업 ③희망종사상지 위 ④희망월평균임금	- (※인력수급전망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의견을 반영, 일몰제 적용)	

# ○ 2014.3.19(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항목 삭제	- 그만 둔 직장의 재직기간 - 총직업근무년수	- 삭제	- 활용도 미비(일몰제 적용)
항목 추가		-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여부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여성가족부)
최무 버거		- 경력단절여성 조사 항목에 <u>"가족돌봄"</u> 보기 문항 추가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여성가족부)
항목 변경	-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 교육(훈련)은 무엇입니까?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은 무 엇입니까?	- 직업교육훈련 효과 등 파악
조사주기 변경 (사회보험가입현황)	- 연 2회(상/하반기)	- 연 1회(상반기)	-1회 조사로 조사목적 달성

# ○ 2015.3.23.(승인)

- 조사항목 조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번호	항목	번호	항목	1 20/TT
표지 문구	응답자 및 조사원 <b>연락사항</b>	표지	응답자 및 조사원 <b>연락처</b>	의미의 명확화
표지 문구	<b>공익근무요원</b> 등의 가구원	표지	<b>사회복무요원</b> 등의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문구	"조사대상주간"을 매 문항마다	공통	6번 다음에 1회만 명시 후 각 문항	조사표 공간의
변경	명시	0 0	에서는 삭제	효율적 활용
설문 문항 배열	비구성	공통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 경제활동인구 등)별로 조사표 구성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구조 일치
7	조사대상주간의 주된 활동	28	①27번으로 이동 ②보기 재구성/비경제활동인구만 응답 ■일하였음, ②일시휴직, ③구직 활동, ④발령대기() 15결 혼준비 삭제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배치 및 문구 일치
8	수입있는 일	7	항목 분리 및 질문 문구 변경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관련부처 및 전 문가회의시 요구 사항 반영
		8	항목 분리 및 질문 문구 변경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변경전		 변경후	2-2.2.6
번호	항목	번호	항목	변경사유
9	▶ 질문 문구 변경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대상주간~" ▶ 보기 재구성 "⑨ -1. 일을 하지 않은 이유~" • ⑬ 교육 • ⑭ 육아, 가족적 이유	9	▶ 질문 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는~" ▶ 보기 재구성  -"⑨ -1.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  • ③ 교육·훈련  •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0	4주간 구직여부	20	①문구 추가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 았음'에 해당함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1	①질문 문구 등 변경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 (부업)을 한 적이~"	10	①질문 문구 등 변경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2	①문구 변경 • "주업" • "부업" • "18시간미만무급가족종사자"	11	①문구 변경 • "주된 일" • "다른 일" •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3	①문구 변경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21	①문구 변경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 작할 수 있었습니까?"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4	①문구 변경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③보기문항 변경 • ⑪공공 직업알선기관 • ⑫민간 직업알선기관 • ⑬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인터넷 등) • 웹시험응시 • ⑫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민간알선기관)	22	①문구 변경 "주로 어떤 방법과 경로로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②기존 구직경로와 구직방법 순서 변경 ③보기문항 변경 • ①공공 취업알선기관 • 민간 취업알선기관 • 민간 취업알선기관 • ①시험접수, 시험응시 • ②구직등록, 구직응모 • ③ 사업체에 문의, 방문, 원서제출 ④ 22·1 "⑤ 친척, 친구, 동료에게 소개 부탁"보기 신규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5 (구직 기간)	①문구 변경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23	①문구 변경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 을 얼마 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6	①문구 변경 •"①예", "②아니오"	24	①문구 변경 ・"①원하였음", "②원하지 않았음" ②『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하위 항목으로 분류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8	①문구 변경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26	①문구 변경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 까?"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19 (이직 시기)	①항목구조 재구성	28	①항목구조 재구성 이중질문을 단일 질문 2개로 구성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조사항목의 명 확성 제고

	변경전		변경후	v1 <del>-1</del> v1 ∧
번호	항목	번호	항목	변경사유
20 (이직 사유)	①질문, 보기 문구 변경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개인, 가족 관련 이유  • "가족돌봄"	29	①질문, 보기 문구 변경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 는 무엇입니까?" ・ ■개인, 가족적 이유 ・"가족돌봄(육아제외)"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 관련부처 및 전문가회의시 요구사항 반영
21 (산업)	①문구 변경 •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12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 주간에 어디에서 일 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①문구 변경 •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30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 주간에 어디에서 일  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22 (직업)	①문구 변경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의 종류	13	①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내가 한 일	
	①문구 변경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의 종류	31	①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내가 한 일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23	①문구 변경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어떠했습니까?"	14	①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 위는 무엇입니까?"	- 항목 분리(취업 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①문구 변경 •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어떠했습니까?"	32	①문구 변경  •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 위는 무엇입니까?"	
27	①문구 변경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정했음  ・정하지 않았음(정년포함)  ・고용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7	① 질문 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문구 일치
29	교육훈련1		삭제	- 일몰제 적용
30	교육훈련2		삭제	- 일몰제 적용
기타 (종사 자규 모)	①항목 배치 변경		①항목 배치 변경  ・산업 문항 다음으로 이동 ②문구 변경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사업체)의 종사 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전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 나 되었습니까?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배치 및 문구 일치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번호	항목	번호	항목	1 2/3/FT
기타	①조사항목 순서 변경 •3개월평균임금→근로기간 →사회보험		①조사항목 순서 변경  - 근로기간—사회보험—3개월평균임금	- 조사의 효율성

# ○ 2015년 9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코기된 ㄷ 24페 된ㅁ	- 인적시항 등 31개 항목*	
	- 인적시항 등 34개 항목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이동	
	19. 시간제근로(평소 주당 30시간 이하) 일자리가 있다면 일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 예 ② 아니오 □ 19-1. 전일제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시간제 일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삭제) 경제활동인구조사 49번 항목 에서 조사	
작성항목 (결과표)	28. 현재 재직중인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예 ② 아니오  ▶ 28-1. (복수응답 가능) 어떤 형태의 유연근무제를활용하고 있습니까? ( ),( ) ① 시간제근로제 ② 시차출퇴근제 ③ 선택적 근무시간제 ④ 재택 및 원격근무제 ⑤ 탄력적 근무제 ⑥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삭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태별 부가조사 68번 항목 에서 조사	
	29. (복수응답 가능) 향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면 어떤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습니까? ( ), ( )  1 시간제근로제 5 탄력적 근무제 2 시차출퇴근제 6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3 선택적 근무시간제 7 활용하고 싶지 않음 4 재택 및 원격근무제	(삭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태별 부가조사 69번 항목 에서 조사	

# ○ 2016.8.19.(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조사항목	31개 항목	34개 항목 (신규3, 변경1) (연간 고용이동성 등 추가)		

### ○ 2017.3.29.(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가구원명부에 교육정도 신설		
조사항목· 결과표	-	맞벌이가구 항목(21항) * 신설: ⑧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 * 문구수정 ⑥ 자녀의 취업준비 때문에	관련 정책부처의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	

# 2. 모집단 및 표본틀

#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 목표모집단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 □ 조사모집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총) 결과 대한민국의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2017.5.15. 기준)
- 군대병영, 병원, 교도소 등 특수사회시설조사구(4)를 제외한 일반조사구(1, 2, 3, A) 내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표 3-5> 가구 및 연령별 인구 분표

						(단위 : 명, %)
	조사구	가구	인구(≥15)(b)	15~29	30~59	60이상
 전국	687,019	19,531,872	43,094,595	21.9	56.6	21.5
 서울	134,514	3,910,164	8,560,713	22.5	56.7	20.8
부산	47,699	1,346,185	2,982,002	21.0	54.4	24.6
대구	32,251	937,019	2,092,836	22.2	56.3	21.4
인천	36,885	1,065,058	2,425,763	22.2	59.4	18.3
광주	19,477	572,898	1,247,987	24.6	56.7	18.8
대전	20,652	588,053	1,286,678	25.5	56.1	18.4
울산	15,451	432,816	969,845	22.3	61.2	16.5
세종*	3,067	76,304	161,173	22.9	59.1	18.0
경기	151,329	4,530,491	10,339,481	22.2	59.9	17.9
강원	22,547	610,471	1,287,691	21.0	52.4	26.6
충북*	22,790	612,073	1,333,907	22.1	54.5	23.5
충남*	29,734	814,524	1,766,817	21.8	53.4	24.8
전북	26,779	725,474	1,550,017	21.2	51.4	27.4
전남	26,900	728,965	1,522,104	18.0	50.9	31.1
경북	41,009	1,076,910	2,288,329	19.9	52.6	27.5
경남	47,817	1,280,146	2,784,241	20.3	57.1	22.6
제주	8,118	224,321	495,011	21.0	56.6	22.4

####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 표본추출들

#### ○ 목표모집단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2017.11. 1. 기준)
- 군대병영, 병원, 교도소 등 특수사회시설조사구(4)를 제외한 일반조사구(1, 2, 3, A) 내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표 3-6> 조사모집단 포함률

	조사구	가구	전체 인구	≥만15세 인구
전체	98.6	99.9	98.5	98.3

#### ○ 표본추출틀

- 2015년 인총 전수조사구 중 일반 조사구(1, 2, A)를 대상으로 등록 및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
- 실제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조사구(3) 및 일부 섬조사구(2) 제외
- 섬조사구 중 시군 내 섬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완도군(38.2%), 진도군(13.3%), 신안 군(71.9%)은 포함(포함률 50%)
-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은 전국 기준 조사구 99.2%, 만 15세 이상 인구 98.6% 수준임

### □ 표본추출틀의 출처

○ 통계명: 「인구주택총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작성년도 : 2015년

# □ 표본추출틀 선정이유

-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거주지 정보와 주택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산업과 직업코드, 지역 정보 등과 같은 근로형태적 특성등이 자세히 제공되어 표본추출틀로 사용하기에 적합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따라 인구, 가구 및 주에 대한 최신 모집단 확보
-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을 제공함

# □ 표본추출틀 갱신 과정 및 내용

- 2010년 인총자료\*와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자료를 연결하여 분류지표 선정을 위한 분석 수행
  - (1차 행정구역) 군을 포함하고 있는 4개 광역시 및 동읍면으로 구성된 도(시군)의 행정 구역별 고용률 차이를 검정한 결과,

- 4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모두에서 구·군별 고용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동·읍·면을 포함하고 있는 133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구역 간 고용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현
- (2차 주택유형) 주택유형\*에 따른 고용률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수행
  - 특·광역시는 주택유형을 5개(단독, 아파트(소형·중형·대형), 기타)로 분류했을 때 고용률 차이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 도(시군) 지역은 지역에 따라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 (층별 분류지표 선정) 경활상태와 연관성이 높은 분류지표 선정
  - 고용조사 표본은 경활표본과 별도표본을 결합한 형태이므로, 경활조사의 표본설계 시 적용한 부류지표\*를 중심으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탐색
    - \* 15~29세비율, 3~40대비율, 60세이상비율, 자가비율, 농림어가비율, 1인가구비율, 30세이상대졸자비율, 대졸자비율, 주택유형, 서비스업취업자비율, 광제조업취업자비율, 농림어업취업자비율
- (상관분석) 인구 및 가구특성 관련 주요 변수 및 경활 분류지표에 대하여 고용률 및 실업률과의 상관분석 수행
  - 13개 변수에 대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 특히 농가비율, 15~29세 비율, 65세 이상 비율 등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많은 층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시현
- (회귀분석) 상관분석 결과 도출된 13개 변수를 대상으로 충별 분류지표 선정을 위한 다중 선형회귀분석\* 실시
  - \* 종속변수는 고용률임
  - 다중선형회귀모형에 변수선택법(stepwise)\*을 적용하여 층별 분류지표 선정
  - \* 변수선택시 변수제거 0.1(SLS), 변수추가 0.2(SLE) 기준 적용

#### □ 표본추출틀 주기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주기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주기를 표본추출틀 갱신 주기로 활용하여 지역별고용조사 표본추출틀도 5년 주기로 관리

<표 3-7>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조사구, 가구, 명, %)

		2015년	
	조사구*	가구	인구(≥15)(b)
 전국	687,019	19,531,872	43,094,595
서울	134,514	3,910,164	8,560,713
부산	47,699	1,346,185	2,982,002
대구	32,251	937,019	2,092,836
인천	36,885	1,065,058	2,425,763
광주	19,477	572,898	1,247,987
대전	20,652	588,053	1,286,678
울산	15,451	432,816	969,845
세종	3,067	76,304	161,173
 경기	151,329	4,530,491	10,339,481
강원	22,547	610,471	1,287,691
충북	22,790	612,073	1,333,907
충남	29,734	814,524	1,766,817
전북	26,779	725,474	1,550,017
전남	26,900	728,965	1,522,104
 경북	41,009	1,076,910	2,288,329
경남	47,817	1,280,146	2,784,241
제주	8,118	224,321	495,011

##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 표본설계 방법 및 과정

- 표본설계 방법
  - (고려사항) 고용조사의 표본배분은 ① 동시점에 조사되는 경활조사와의 정합성, ② 지역 수준별 공표, ③ 과거 조사에서의 실업자 및 취업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표본배분) 2015년 인총 결과, 시도 및 시군 통계작성, 최근 2년('15~'16년) 간 고용조사의 실업자 및 취업자 산업·직업의 분류 수준별 RSE 등을 고려하여 표본배분 진행
  - (배분결과) 인구 규모, 통계작성 수준, 이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광역시는

표본규모 축소, 도지역은 표본규모 확대

- 특·광역시\* 중 실업자 및 산업·직업 중분류 RSE가 안정적인 서울, 부산, 인천 등은 표본규모 축소, 대전, 울산 등은 확대
  - \* 세종시는 2017년 상반기 표본개편 결과 유지
- 도별 시군수, 시군별 인구규모 및 실업자 RSE 등을 고려하여 전남 및 경북을 제외한 도 지역의 표본규모 확대
- 목표 표집오차
- 실업자 RSE 평균('15~'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 하반기 고용조사의 실업자 RSE는 4.0~89.9% 수준으로 예상(부록2 참조)
  - 실업자 RSE 최소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은 3개 수준임
  - 예상 상대표준오차 산출식

$$RSE_2 = \sqrt{\frac{n_1}{n_2}} \times RSE_1$$

여기서  $n_1$ : 현재 표본수,  $n_2$ : 새로운 표본수,

RSE<sub>1</sub>: 현재 상대표준오차, RSE<sub>2</sub>: 예상 상대표준오차임

- 표본추출 규모
  - 전체 표본규모는 공표지역 확대(세종)를 고려하여 2016년 보다 46개 조사구가 순증\*한 8,366개 조사구로 결정
    - \* 경활조사 표본을 제외한 별도 표본조사구 규모가 순증되었으며, 확대규모는 「2017년 지역별고용조사 세종시 표본설계 결과 보고」(표본과-3003, 2016.11.30.) 참고
  - 경활조사 표본조사구(1,697개 조사구\*)를 포함하여 전체 고용조사 표본조사구는 10,063개 조사구
    - \* 1,647개 경활표본에서 충남 내 세종 지역 조사구(4개)를 제외하고, 세종시 경활표본(54개 조사구)을 포함한 규모이며, 연동표본제 적용에 따라 2개 조사구에서 조사가 가능하므로 하반기 조사 시 경활조사의 표본 조사구는 1.886개 조사구임

<표 3-8>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규모 변화

	(단위: 조사구)			(단위: 조사구)
2016년		2017년	하반기	
9,9	967		10,063	(+189*)
 경활	경활 별도		경활	별도
1,647	8,320		1,697*(+189**)	8,366

<sup>\* 1,647(</sup>경활)+54(세종)-4(충남 내 세종지역)

<sup>\*\*</sup> 연동교체 되는 그룹(189개 조사구)에 대하여 2개의 조사구가 조사됨

### 3-2 표본관리

### □ 조사대상의 생멸, 전입, 전출 등 표본 내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보완 방법

- 조사구 철거 예정, 행정구역 변동에 의해 해당 조사구의 관할이 일부만 변경된 경우,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표본조사구 교체사유 발생시 아래 절차에 따라 표본대체
  - ① 표본 조사구 교체요청(각 지방통계청(사무소) ⇒ 고용통계과)
  - ② 교체사유 타당성 검토(고용통계과)
  - ③ 대체 표본조사구 추출(표본과)
  - ④ 요도 및 가구명부 복사(마이크로데이터과, 고용통계과)
  - ⑤ 전산요도 확인 및 현방문하여 조사 가능성 확인(각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 ⑥ 전산요도 보완 및 가구명부 재작성(각 지방통계청(사무소))
  - ⑦ 조사구 최종 확정(고용통계과)

#### □ 조사대상자 관리방법

- 조사 실시 1개월 전에 표본 조사구 변동 여부를 사전 답사
  - 조사구 경계 재확인 및 요도보완
  - 요도 보완과 동시에 조사 순서대로 상호 인접되게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명부 작성
  - 표본조사구 내 가구 일련번호 작성
- 조사구내 조사 홍보용 팜플렛, 플랜카드 등 부착
- 조사 실시전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협조사항 등에 대한 조사안내문 사전 우편 발송
- 조사 응답가구에 대해 조사필수품 제공
- 조사후 전화모니터링 실시

## Ⅳ. 자료수집

### 1. 조사방법

### □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임시 조사직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와 「인터 넷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응답자기입」방법 병행
- 인터넷조사 방법 도입한 이유
  - 표본조사에 대한 정보노출, 조사원불신 등에 따른 불응률 상승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조사기간 내 면접이 어려운 표본가구가 많고, 개인 보호 의식 강화 등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불응가구의 조사 참여 유도를 위해 인터넷 조사 병행 실시
  - 인터넷조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설문항목들을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조사 참여시간을 단축
- 인터넷조사 응답비율

#### <표 4-1>연도별 인터넷조사 응답률

(단위: %)

	′14			15		16	'17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지역별고용조사	2.5	2.6	2.8	3.4	2.3	4.0	2.5	3.7

- 조사방법 효율성 및 정확성 검토
  -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보호 의식 강화 등 조사환경의 악화로 불응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이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행정자료 우선 활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 바 있으나, 활용에 부적합 발견으로 미적용함
  - 검토대상 행정자료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외 3개 기관 9종)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 및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국민연금공단 : 지역 및 시업장 기업자자격취득신고서, 당연적용시업장 해당 신고서
  - 고용보험공단: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 조사과정

- 조사구 적격심사 및 가구관리종합표 보완
  - (본청) 조사구요도 및 가구 명부 출력, 조사표류 인쇄, 협조문 발송 준비, 조사용품 제작 의뢰
  - (지방청) 조사구 적격심사, 요도 및 가구관리종합표 보완
- 조사직원 교육
  - (본청) 지방청·사무소 교관단 대상 교육 실시, 콜센터상담사 교육
  - (지방청) 조사원, 조사관리자 등 자체교육 실시
- 인터넷조사
  - (본청) 인터넷조사시스템 점검, 인터넷조사 진척률 현황 파악, 민원 처리
  - (지방청) 인터넷조사 가구 파악, 응답가구 질문사항 답변, 응답문항 내용 검토
- 준비조사
  - (본청) 조사구 대체 지원
  - (지방청) 조사구 경계 및 요도 재확인, 가구명부 등 보완
- 본조사
  - (본청) 실사지도, 업무진행 파악, 조사지침 등 관련 사항 해결, 조사시 발생하는 문 제 해결 및 민원 대응
  - (지방청) 조사표 작성, 가구관리종합표 작성, 조사표 내검 및 산업·직업 등의 코딩
- 전산 입력·내검
  - (본청) 입력요령지도, 내검 실사지도, 전산내검 진척률 파악, 내용 검토
  - (지방청) 조사표류 정리 및 편철, 산업·직업 시·군 코딩 점검, 조사표 입력 및 내검

#### 2. 조사원

##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 조사원 채용방법 및 과정

- 조사원 채용규모 확정(본청)
  - 조사업무량 배정 기준 마련 및 업무량에 따른 조사원, 예비조사원, 조사관리자 등 채용 규모 확정
- 조사원 채용 공고(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 1차 서류 합격자 대상 2차 면접 실시 후 최종 확정
    - ※ 지역별고용조사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조사 완료 후 조사원별 사후평가에 따른 가감점 적용 원칙
- 조사원 교체(지방청·사무소)
  - 개인적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조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조사 품질이 일정수준

이하로 조사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원\*으로 대체

\* 조사원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예비 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실시

### □ 조사원 자격

- 조사원 선발자격
  - 지역별고용조사 또는 통계청 기타 조사 수행경험자
  - 기존에 참여하였던 조사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에서 수행결과가 우수한 자
  - 통계청 조사원 준수사항에 동의한 자
  - 기타 조사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조사원 지위 및 급여
  - 조사원은 정해진 조사기간 동안 배정받은 조사량을 수행하는 방식의 도급계약으로 체결
  - 조사원 급여는 조사가 완료된 표본가구수(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한 경우에 1가구 조사완료 인정)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
  - 조사원의 급여는 교육수당과 준비조사 및 본조사 수당으로 구성하되, 근무지외 지역의 경우 일부 교통비에 해당하는 급여 추가
  - 최종 조사가 완료된 가구수를 확인 후 급여가 지급되며, 조사 완료전에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급할 급여에 대해 일정부분 수당감액\* 지급
  - \* 수당감액 내용에 대해 조사원 계약 체결 전 사전에 계약당사자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있음

### □ 우수 조사원 채용을 위한 노력

- 조사 완료후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의 성실성, 조사의 정확성, 보안사항 이행정도, 업무이해도, 조사의 노하우, 조사완료율 등 다양한 기준으로 조사원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
  - 평가 점수가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통계조사에 채용하고 있으며, 평가감점 사유가 있었던 조사원에 대해 감점사유별로 재채용 여부 결정
- 조사가 완료된 표본가구에 대해 무작위로 10%의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조사의 결과의 정확성 확인 관리
  - 확인 결과 부실조사 또는 허위조사가 발견된 조사원에 대해서는 통계청 조사업무에 채용시 고려
- 우수 조사원에 대해 통계의 날 등에 포상 대상자로 추천

### 2-2 조사원 교육훈련

### □ 조사원(조사관리자 포함) 교육훈련 과정

- 교육체계
  - 지도공무워에 대한 교육
    - 과(고용) 팀장이나 지역별고용조사 담당자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에 대한 교육
    - 지역별고용조사 담당자 또는 경활조사 담당자 중 지역별고용조사 교육을 이수한 지 방청·사무소 교관이 전달교육
- 교육대상
  - 지도공무원, 조사원(예비조사원 포함),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등

#### □ 교육내용

- 상반기 조사의 주요 특징 및 인터넷 조사 방법
- 일정별 수행사항,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항목 개념 정의
- 지도공무원, 조사관리자, 조사원의 담당 업무
- 조사표 내용 검토요령, 「산업, 직업 항목」 조사방법 및 코딩 지도
- 조사표 회수 및 제출방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안전대책 및 안전매뉴얼 등

#### □ 교육방법

- 지침서 위주로 가구명부, 조사항목 등 기본개념 교육
- 조사원, 조사관리자에게 인터넷조사 아이디를 부여하여 조사표 작성 실습 실
- 사이버교재를 활용하여 선(先) 교육 및 반복 학습 유도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용으로 구분

## □ 교육일정, 시간, 강사

- 담당팀장 및 (총괄)담당자 집합교육
  - 일시 : 상반기조사 3월말, 하반기조사 9월말 기간 중 1일
  - 교관 : 고용통계과 지역별고용조사 담당 직원
  - 대상 : 지방청(사무소)별 고용통계 담당팀장, 지역별고용조사 (총괄)담당자 등
- 지방청(사무소)별 자체 전달교육
  - 일시 : 조사 시작 전까지(기간 중 1일) \*\*지방청(사무소)별로 자체 교육계획 수립
  - 교관 : 지방청(사무소)별 담당팀장 및 담당자 집합교육 이수 직원
  - 대상 : 지도공무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예비조사원, 업무보조원 등

<표 4-2> 조사원(조사관리자 포함) 교육 일정표(예시)

	시 간	교 육 내 용
오 전	09:30~10:30	- 조사실시요령 · 현장면접조사요령(안전교육 포함) · 조사표 제출 의무 · 조사개요 및 조사일정별 수행사항 ·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 이용법 · 인터넷조사방법
	10:40~11:50	- 조사지침서 교육 ·조사항목 및 내용 ·경제활동상태별 정의
	$12:00 \sim 13:00$	점심시간
	13:10~14:00	- 조사표 내검 - 나라통계시스템 사용법
오	14:10~15:00	- 조사사례(1) · 일반적인 사례 및 추가항목 설명 · 산업직업 관련사례 설명
Ť	15:10~16:00	- 조사사례(2) · 조사표 작성 실습
	16:10~17:30	- 조사전반에 관한 질의 응답

<sup>\*</sup> 각 지방청(사무소)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 조사원 평가

○ 지방청(사무소)별 재량적 실시, 의무사항 아님

## 2-3 조사원 업무량

# □ 채용기준별 담당 업무

구 분	주요 담당 업무
조 사 원	<ul> <li>담당 조사구 경계 및 업무량 확인</li> <li>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 수정 및 보완</li> <li>인터넷조사 홍보 및 참여번호 배부</li> <li>가구 방문, 조사표 작성 및 조사필수품 전달</li> <li>조사표(면접, 인터넷)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li> <li>조사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착오사항 확인</li> <li>지도공무원의 소집에 응하여 지방통계청(사무소)으로 출근하여 지도 공무원에게 조사표 내용과「가구관리종합표」작성사항을 점검 받음</li> </ul>
조사관리자	・「가구관리종합표」를 통한 조사원 활동상황 점검 및 조사 지도 ・ 불응, 불능가구에 대한 대응지침 및 설득 ・ 조사표 입력 전 내용검토(본조사 기간 중) ・「산업·직업분류」 코드 부여
입력내검원	・「산업·직업분류」코드 점검 ・ 조사표 전산입력 및 전산 내용검토

#### □ 조사원당 업무량

- 기본 원칙
  - 지역별고용조사 1회 실시기간은 약 18일(교육 1일, 준비조사 1일 포함) 정도로 계획, 1일 5가구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량 배정
- 조사인력 현황

<표 4-3> 조사구수 및 조사인력 현황

	조사구수	조사원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합계(개,명)	8,366	2,092	354	208
배정기준	-	4개 조사구/1인 담당	6명 조사원/1인 담당	• 입력 180매/1일, • 내검 200매/1일 내외

- 업무 배정 결과
  - 조사원 1인당 16일 기간 동안 평균 80가구를 조사
  - 1인 1일당 약 5가구 기준으로 배정
  - 조사원은 설문 응답소요시간과 상관없이 표본가구원 면접을 위해 재방문 등으로 소용되는 시간이 많음
  - 응답소요시간 : 1가구당 평균 66.5분(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표본보완방문횟수 : 1가구당 약 3.9회(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 조사관리자 업무량

- 기본 원칙
  - 조사원 6명당 1명의 조사관리자 배정
  - 채용일수: 1회 조사시 17일
- 업무 배정 결과
  - 인터넷조사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담당조사원에게 보완 조치
  - 불능, 불응가구 보고 및 대응지침을 조사원에게 전달
  - 「가구관리종합표」를 통한 조사원의 활동상황 점검
  -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조사지도
  - 산업·직업항목의 분류부호 코딩
  - 기타 조사표류 확인 및 편철

#### □ 입력·내검원 업무량

- 기본 원칙
  - 입력 180매/1일, 내검 200매/1일 내외
  - 채용일수: 1회 조사시 10~13일
- 업무 배정 결과
  - 산업·직업항목의 분류부호 코딩 보완

- 조사표의 전산 입력
- 조사표의 입력내용 검토 및 질의
- 조사표류 편철

# 3. 조사 실시

# 3-1 조사업무 흐름도

## □ 단계별 업무 흐름도

○ 매년 반기별로 동일한 조사 절차 유지

<표 4-4> 2018년 상반기 조사 업무 흐름도(예시)

일 정	추 진 업 무	비고					
2~3월	• 나라통계시스템 개선	고용통계과 및					
2~3결	• 조사구 적격심사 및 요도보완	지방청(사무소)					
Û							
3~4월	• 조사직원 채용	가 기비하기가 다 사					
(4.13.까지)	- 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보조원	각 지방청(사무소)					
3.29.	• 교관단 교육(1일)	통계센터(대전)					
Û							
	• 조사원 등 교육(기간중 1일)	크 기리리크 크 기 (i)					
4.16.~4.20.	- 지방청(사무소) 자체 전달교육	조사관리자,조사원,					
	* 조사표 및 조사필수품 등 배부	업무보조원 등					
Û							
	● 준비조사 : 4.22.						
4.22. ~ 5.9.	● 본조사 : 면접조사 - 4.23.~5. 9.(기간중 16일)	각 지방청(사무소)					
	※ 인터넷조사- 4.23.~4.27.(5일)	,					
Û							
5.14.~5.31.	•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각 지방청(사무소)					
<u> </u>							
6~8월	● 본청 내용검토(산업·직업분류 포함) 및 수준분석	고용통계과					
0~o 된	- 산업·직업 세분류 본청 내검요원 검토	T-9-9-41-4					
Û							
8월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고용통계과					
Û							
8월말	• '18년 상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공표	고용통계과					
Û							
10월말	• '18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공표	고용통계과					
Û							
   11월말	• '18년 상반기 부가조사항목(경력단절여성 현황)	고용통계과					
11 包 包	결과 공표	<u> </u>					
Û							
   12월초	• '18년 상반기 부가조사항목(자녀별 여성의	고용통계과					
17 包立	고용지표) 결과 공표	고 5 7 개 <del>기</del>					

##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 조사홍보

○ 온라인 및 포스터·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현황

<표 4-5> 2017년 하반기 홍보 실적(예시)

부서명 (홍보종류)	제목	주요내용
	관용차 랩핑 홍보 ('17.9.25.~11.7.)	○ 통계청, 5개지방청 관용차(승합차, 소형차 등)를 활용하여 랩핑 홍보
	지자체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홍보	○ 지방자치단체 운영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활용
	('17.9.25. <i>~</i> 11.5.)	- 특·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고용통계 관련 광고물 게시
	지자체 홈페이지 홍보	○ 지방자치단체(시·군청)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고용통계 홍보
고용통계과	('17.9.25. ~11.7.)	- 홈페이지 게시용 디자인 및 홍보문안 제작 제공
(.포스터 등)	반상회보 홍보 ('17년 3월, 9월, 10월)	○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 반상회보에 고용통계 홍보물 게시
	홍보용 포스터 활용	○ 홍보용 포스터물 게시(전국 2만 500여개소 내외)
	('17년 4월, 10월)	- 지방통계청·사무소(분소),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야외
	기기의 취수 중요	게시판에 홍보용 포스터 게시(A4, A3, 국2절 등 3종류)
	전광판 활용 홍보 ('17년 10월)	○ 대전 둔산동 통계센터(나라키움센터) 전광판 활용 홍보
고용통계과	기관장 기고	○ 어르메레에 토게취자 기고무 게지
(기관장기고)	('17년 10월)	○ 언론매체에 통계청장 기고문 게시

### □ 응답자 사전 통지

- 표본가구에 인사장 및 안내문 배부
  - 인사장(인터넷조사 참여 안내문 포함) 우편 발송으로 표본가구에 조사실시 사전 안내
  - 효율적인 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 방문시에 통계청장 인사장을 배부하고 조사응답 협조 요청
  - 준비조사시에 조사구별 조사협조자에게 통계청장 인사장을 전달하여 조사협조 요청 및 해당 조사구에 관한 특성 파악
    - 홍보용 포스터를 이용하여 동·읍·면 및 조사대상지역에 홍보
    - 조사대상 가구에 인터넷조사 실시를 알리고 참여를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 인터넷조사 참여 ID와 임시비밀번호 안내

### □ 조사구 확인

○ 조사구 적격심사

- 지방청(사무소)에서 조사구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지속적인 조사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구 대체 요청
-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 □ 조사 명부 보완

<표 4-6> 가구관리종합표 작성 예시

사	무소	행정구역	조사구	협조	스자이듬	름 협조자직위	협조자전화번호	조	사원	조사관리자	지도공무원
00시	무소	3733031	0151	7.	]협조	통장 010-123-4567 김:			조사	이관리 최지도	
순번	거처 및 가구번.	가구주	총 가구원 수	거처 종류	응답 상태		주소		가구 대체 번호	н) <u>`</u>	17
1	05200	홍길동	5	3	1	진산면 살구정길	44 태창빌라 101	호			
2	052002	2		3	2	진산면 살구정길	44 태창빌라 2013	호	21	강력한 응	응답거부
3	052003	대장금	3	3	1	진산면 살구정길	44 태창빌라 301	<u>ই</u>		외국인 2	명 거주
4	05300	. 김살구	4	1	1	진산면 살구정길	50				
5	05400	-		1	4	진산면 살구정길	52		22	전출 후 이사요	2지않음(빈집)
6	05500	-		1	5	진산면 살구정길	60		25	페;	7}
23	00500	-		1	3	진산면 살구정길	85			장기-	부재
24	00600	. 정태양	4	1	1	진산면 살구정길	86		8		
25	00700	. 백동수	2	1	1	진산면 살구정길	90		6		

※ 거처종류 : ① 단독주택(원룸포함) ② 아파트 ③ 기타

응답상태 : ① 응답 ② 불응 ③ 장기부재 ④ 빈집 ⑤ 폐가 ⑥ 기타적격가구 무응답 ⑦ 기타부적격가구 무응답

##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및 기입시 유의사항

○ 면접원을 위한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3-4 현장조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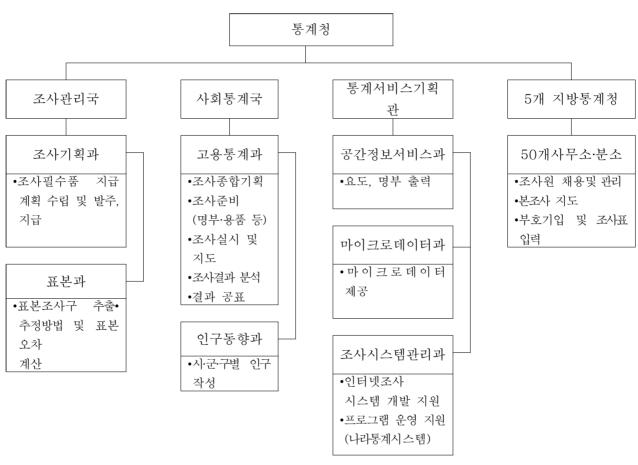
### □ 관리체계

- 현장조사 관리체계
  - 1차 지방청·사무소 지역별고용조사 조사관리자(슈퍼바이저), 2차 지방청·사무소 지역별

고용조사 총괄담당자, 3차 통계청 고용통계과 담당자 순으로 현장조사 관리

- 직접관리 : 고용통계과, 지방청·사무소 사회조사과
- 협력관리 : 조사기획과, 표본과, 인구동향과, 공간정보서비스과, 조사시스템관리과, 마이크로데이터과
- 현장조사 체계
- 통계청 ⇔ 지방통계청(사무소) ⇔ 조사직원 ⇔ 조사대상가구

<그림4-1> 지역별고용조사 체계도



### □ 현장조사 관리 방법

- 조사관리자(슈퍼바이저)의 1인당 조사원수
  - 지역 현장조사 관리자 1인당 담당 조사원 수는 평균 조사원 6명
  - 직접관리 : 고용

##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 응답자의 질의응답 대응 체계

- 지역별고용조사의 민원 및 문의에 대한 '전담 창구'운영
  - 응답자가 조사 및 조사표 작성시의 문의사항, 불만 및 의견제시 등을 대처하기 위한

'콜센터 상담사' 운영

- 콜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시작 2~3주전 지역별고용조사 지침 및 유의사항 등 에 대해 집합교육 실시
- 나라통계시스템에 '게시판' 운영
  - 응답자가 조사 관련 조사표 작성, 또는 인터넷조사시스템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고용통계과, 조사시스템관리과 담당자가 답변

#### □ 조사원 질의 응답

- 질의응답 체계
  - 조사원의 문의사항은 대부분 지역의 현장조사 관리자에 의해 처리
  - 지역의 현장조사 관리자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사항은 지방청(사무소 포함)지역별고용 조사 총괄자에 의해 처리
  - 지방청(사무소 포함) 지역별고용조사 총괄자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사항은 본청 고용 통계과 담당자에 의해 처리
  - 나라통계시스템에 '게시판' 운영으로 현장조사와 관련 질의사항과 본청 답변자료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 본청 담당자 실사지도 실시
  - 조사 및 입력·내검 기간 중 본청 담당자들의 현지 실사지도를 통해 조사표 내용검토와 질의 응답 실시
  - 다음반기 조사를 위한 개선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방법

○ 주요한 질의 응답이나 오류사례 등에 대해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지역별로 배부하여 조사에 참고하도록 지도

## 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 4-1 응답자

### □ 적격 응답자의 지위 및 지정이유

○ 지역별고용조사 표본가구의 구성원을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1차 구분, 가구주를 먼저 선정하여 가구주를 기준으로 가구원들의 관계 적용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
- 「생계책임자」는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사람
- 세대주가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 ⇒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 됨
- 한 가구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는 한국인 중에서 선정
- 조사표 작성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 등 가구사항을 잘 아는 응답자에게 면접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표 표지내용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 등 가구사항을 잘 아는 응답 자에게 면접 조사하고, 조사표 항목은 가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면접조사 하는 것이 원칙
  - 가구원에 관한 모든 항목을 응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답자 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적절한 응답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재방문 시간 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
  - 비혈연관계 등 동거인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본인에게 직접조사
    - ※ 조사대상가구 이웃집에 조사대상가구의 정보를 물어보거나 알려주는 행위 등은 통계법으로 제한

## 4-2 기억응답

#### □ 응답자 기억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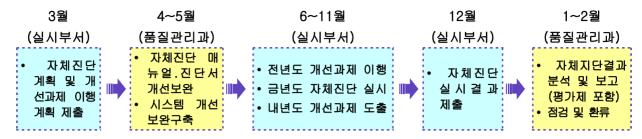
- 조사대상기간을 1주일로 최대한 짧게 설정하여 기억응답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 조사대상기간을 조사대상월인 4월 10월 15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조사대상주간으로 지정
  - 조사실시 기간을 조사대상기간과의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조사대상기간 바로 다음날 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기억응답을 최소화
- 자료내검 과정에서 일부 중요 항목에 대해 전년동기 자료 비교를 통해 이상치가 발생 하는 경우 응답내용의 정확성을 사후 확인

## 5. 사후조사

#### □ 품질평가

- 조사결과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품질관리과을 운영하며, 사후 품질 검증을 실시함
  -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수시통계품질진단과 정기통계품질진단으로 구분
- 자체품질진단방법
  - 각 조사별 담당자가 나라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문항(Check-list)에 응답하는 방식

#### ○ 자체품질진단절차



- 등급 결정방법
  - 매년 총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표 4-7>등급별 평가 기준

총점	등급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양호
7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
60점 이상 ~ 70점 미만	주의
60점 미만	미흡

#### □ 조사원 관리

- 현장조사 결과 검증제도 운영
  - 추진근거 : 현장조사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463호)

제30조(조사 확인점검) ① 지방통계청장과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02.02>

- 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본청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통계청장에게 재확인(이하 "현지확인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07., 2017.02.02>
- ③ 지방통계청장은 소속 현장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확인점검(이하 "자체확인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5.12.07., 2017.02.02>
- ④ 지방통계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점검 또는 자체확인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표 4**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조사기획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7., 2017.02.02>

제31조(확인점검결과 처분·활용) 지방통계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현지 또는 자체확인점검 결과가 현장조사 직원의 부실조사 또는 허위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2.07., 2017.02.02>

- 통계조사검증 방법
- 1) 전화모니터링
- 검증방법

- 모니터링요원이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통해 통 계조사별 점검 매뉴얼(질문지)에 따라 검증 실시
- 전화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조사대상처에 대해 지방청 조사 지원과(감사팀)에서 현지 확인점검 실시

조사별 전화모니터링 전화모니터링 현지 확인대상 통계검증 대상명부 입수 표본선정 요위 교육 1차 선정  $\Rightarrow$ 실시  $\Rightarrow$  $\Rightarrow$ (본청 실사부서) (조사기획과) (조사기획과) (모니터링 요원) (조사기획과) 운영실태 점검 및 현지 확인 · 조치, 현지 확인대상 현지 확인대상 결과보고 및 시스템 입력 최종 선정 결과 검토 사전검토  $\Diamond$  $\Diamond$  $\Diamond$ (조사기획과) (지방청 감사팀) (조사기획과) (본청 실사부서)

- 지역별고용조사의 검증은 격년으로 실시
- 전화모니터링 실시
- 한국통계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
- 응답자의 기억오차에 따른 검증오류 최소화를 위해, 현장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전화모니터링 실시
- 임시조사원이 수행하는 연간조사는 별도 감점 없으나 사후평가에 반영(단, 공무원·무기직·기간제 등 직원이 수행한 연간조사 오류는 감점 부여)

#### < 표 4-8>오류 수준별 처분 기준

오류수준	오 류 내 용	처 분
단순오류	업무별 감점 기준표*상의 감점이 3점 미만인 경우	지방청에서
오류	발생한 오류의 감점이 3점 이상 ~ 5점 미만이며, 해당 직원의 전반적인 조사업무 수행상태는 양호한 경우	자체 시정 조치
부실	<ul> <li>발생한 오류의 감점이 5점 이상 ~ 10점 미만이며, 해당 직원의 전반적인 조사업무 수행상태는 양호한 경우</li> <li>발생한 오류의 감점이 10점 이상이며, 해당 직원의 전반적인 조사업무 수행상태는 양호한 경우</li> </ul>	지방청에서 자체 주의
중대부실	- 임의 또는 허위조사**가 확인된 경우 - 발생한 오류의 감점이 10점 이상이며, 해당 직원의 전반적인 조사업무 수행상태가 불량한 경우	경징계: 지방청 자체 중징계: 본청 감사담당관

- 모니터링 내용
- 가구원수, 조사필수품 수령 여부, 조사원 만족도 등
- 모니터링 대상 가구수
- 전체 표본 대상처의 약 3% 정도
- 2) 사후평가
- 추진근거 : 현장조사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463호)

제24조(현황관리) ② 지방통계청장은 나라통계시스템 또는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조사원 채용,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2>

- 사후평가 대상
  - 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등
- 사후평가 방법 및 시기
  - 평가자 및 확인자 : 근무성적의 평가는 근로자 등의 업무담당 사무관(지방통계청은 팀장), 확인은 부서장이 실시(사후평가는 업무담당사무관(팀장)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업 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실시 가능)
  - 계약종료 후 사후 평가 실시
    - ※ 임시조사원의 경우 조사원(조사관리자)으로 채용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입력·내검요원으로 채용되는 때에는 해당업무 최종 완료 후 사후평가 가능
  - 사후 평가는 업무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평가결과
- 당해연도 조사차수별로 연속채용 가능. 이때 직전조사 사후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만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는 사후 평가를 미실시하되, 향후 2년간(포기한 날로 부터 2년간) 채용을 제한
  -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표 4-9>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세부				 평가	 ·결과		
		심사내 <del>용</del>	배점		ΣĘ	경가점수		
항목	항목		叫省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20점	20~17	16~13	12~9	8~5	$4 \sim 0$
업무실적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30점	30~25	24~19	18~13	12~7	6~0
직무수행	협조ㆍ 이해도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	20점	20~17	16~13	12~9	8~5	4~0
능력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20점	20~17	16~13	12~9	8~5	4~0
직무수행 태도	된 권 이 기기							
	7	}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합· 계								
심사결과								
※ 탁월(A	:91점 이건	상), 우수(B:81~90점), 보통(C:71~80	점), 미	흡(D:61~	·70점), 블	불량(E:60	점 이하)	)

#### 6.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 □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 수행 방식이 도급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도급조사원에 대한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수집 어려움
  - 도급조사원 : 일정기간을 정해 연간, 특별조사의 조사표 완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 급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

- ·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나, 도급은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 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도급조사원은 사용자의 <u>구체적인 '근로감독, 지시'가 불가능하며</u>, 진도 파악, 지침전달, 작성상황 점검 등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부분에 대해 관리

## V. 자료처리

## 1. 자료코딩

## □ 조사결과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및 내용(2017년 하반기)

- 조사결과는 조사표상의 부호 값대로 코딩하는 것을 원칙으로 코드체계 정립
  - 분류수준(분석변수)값들은 별도의 코드체계로 변경

분류수준	코드설명	코드체계
21112	지역별고용조사 표본	1
표본구분	세종시 신표본	2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3
	취업자	1
경제활동	실업자	2
인구 상태	비경제활동인구	3
	제외자	4
	15세이상 20세미만	01
	20세이상 25세미만	02
	25세이상 30세미만	03
	30세이상 35세미만	04
	35세이상 40세미만	05
만나이구분	40세이상 45세미만	06
	45세이상 50세미만	07
	50세이상 55세미만	08
	55세이상 60세미만	09
	60세이상 65세미만	10
	65세이상	11

분류수준	코드설명	코드체계
	15세이상 30세미만	1
만나이변환	30세이상 50세미만	2
코드	50세이상 55세미만	3
	55세이상	4
교육정도변환	중졸이하	1
	고졸	2
코드	전문대졸이상	3
이구이그ㅂ	내국인	1
외국인구분	외국인	2

# 2. 자료입력

## □ 전산입력 방법

- 지방청 및 49개 사무소에서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키 엔터링(key entering) 방법으로 조사표 입력
- 전산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해 나라통계시스템에 입력범위 설정에 의한 자동 내검 실시

## □ 자료 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 본청에서 시스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본조사 시작전 사무소 총괄자 교육 실시
- 자료 입력 및 내검 업무 시작 전 지방청 및 사무소의 담당자가 매뉴얼을 참조로 교육 실시

### 3. 자료내검

#### □ 단계별 내검 내용

#### ○ 조사표 입력 전

- 조사표의 각 항목을 조사할 때와 조사항목의 전체 기입을 마친 후에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지침서대로 맞게 기입 되었는지, 무응답항목은 없는지, 점핑에러는 없는지, 관련 항목 사이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응답이 있는지 등을 직접 육안으로 체크

#### ○ 조사표 입력 시

- (1단계) 입력프로그램 설계시 조사표 입력후 저장할때마다 내검사항이 뜨도록 하여 입력단계에서 오류 수정 및 사유 입력 가능하도록 처리



- (2단계) 가구관리종합표 및 가구원명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검의 경우 입력 단계에서 거르기 어렵기 때문에 입력이 70%이상 이루어진 경우 본청담당자가 총괄 적으로 기계내검을 수행 하여 오류 수정 및 사유입력 가능하도록 처리



#### ○ 조사표 입력완료 후

- 항목간 연관성 및 산업직업 코드 검토 등 종합내검 실시

### 4. 무응답

### 4-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의 월평균 임금 항목에 대해서만 무응답 허용
  - 2017년 하반기 전체 임금근로자 140,541명 중 항목 무응답자는 565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0.4%임
    - 임금무응답률=  $\frac{임금근로자중 임금무응답수}{임금근로자수} \times 100 = \frac{565}{140,541} \times 100 = 0.4(\%)$

### 4-2 항목무응답 대체

- □ '월평균임금'에 대한 항목 무응답은 '계층적 대체군핫덱(Hierarchical Hotdeck)' 대체방법을 이용
  - 2017년 하반기 조사 기준 무응답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월평균임금'과 관계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인구(인적사항)·사회학(직업 특성 등)적 특성변수를 대상으로 상관 분석을 실시 하여 월평균임금과 상관관계가 높은(±0.3 이상) 변수를 대체군으로 선정
    - 근무기간(7) > 교육정도(5) > 종사자규모(7) > 종사상지위(3) >성별(2) > 직업분류 순으로 기증자 선정
    - 직업분류는 세분류~대대분류의 상관계수가 큰 차이가 없어 상관계수가 큰 직업대 대분류와 직업세분류에서 기증자 선정

## 4-3 단위무응답 실태

- □ 지역별고용조사 단위무응답 가구는 표본대체 방법으로 목표가구수 대비 100% 조사(응답) 완료
  - 표본대체에 의한 원표본 기준 응답률은 약 75% 내외
  - 지역별고용조사는 현재 5년 고정 표본으로 표본의 노후화에 따라 응답률은 지 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이

## Ⅵ. 통계추정 및 분석

### 1. 통계추정

## 1-1 가중치 조정

### □ 설계가중값

○ 경활표본을 통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최초 표본 중 일부를 경활표본으로 대체하여 사용 함에 따라, 경활표본에 대한 별도의 설계가중값 고려 불필요

 $\cdot \,\, w_{hij}^{\,0}$  $:\,h$ 층의 i번째 표본조사구 내 j번째 표본가구의 설계가중값

 $\cdot$  h : 설계층(162개 시도 및 시군,  $h=1, \dots, 162$ )  $\cdot$  i : 표본조사구 $(i=1,2,\cdots n_h)$ 

 $\cdot$  j : 표본가구 $(j=1,2,\cdots m_{hi})$ 

: 표본가구 내 조사대상 가구원 $(k=1,\cdots,l_{hij})$ 

 $\cdot$   $M_h$  : h층의 전체 가구수

 $\cdot$   $M_{hi}$  : h층 i번째 표본조사구의 전체 가구수

: h층의 표본조사구수

: h층 i번째 표본조사구 내 표본가구수(20가구)

## □ 사후가중값

○ 설계층·성·연령대별로 사후 층화하여 현재(추계) 인구에 맞게 조정

$$\qquad \qquad \quad \circ \quad \ w_{hijk} \, = \! w_{hijk}^{\,0} \, \times \! \frac{X_{h,sa}}{\hat{X}_{h,sa}}$$

. *h* : 설계층(*h* = 1, 2,···,162)

. X : 벤치마킹 모집단 추정값(현재 인구)

.  $\hat{X}$ : 응답한 가구원의 설계가중값 합

: 사후층(성별 2개, 연령 5세별 11개 층)

 $w_{hijk}^{b}$ : h층의 i번째 조사구 내 j번째 가구의 k번째 가구원의 설계가중값

: h층의 i번째 조사구 내 j번째 가구의 k번째 가구원의 사후가중값  $w_{hijk}$ 

## 1-2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 이상치 처리 과정

- 전산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고용조사시스템에 항목별 입력범위 설정에 의한 자동 내검 실시
- 주관식 문항(금액등)의 이상치는 지도공무원, 입력 및 내검요원에 의한 1차 내검(eye checking)에서 발견 즉시, 응답자에게 질의 하여 확인 수정

## 1-3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 총계 추정

$$\begin{array}{ll} \circ & \hat{\boldsymbol{Y}} &= \sum_{h} \; \hat{\boldsymbol{Y}}_{h} \\ \\ \circ & \hat{\boldsymbol{Y}}_{h} \; = \; \sum_{i} \sum_{j} \sum_{k} \; w_{hijk} \, \cdot \, y_{hijk} \end{array}$$

.  $w_{hijk}$ : h층의 i번째 표본조사구 내 j번째 가구의 k번째 가구원의 사후가중값

## 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표본조사일 경우만 기입]

## □ 표본오차 추정

$$\circ \qquad \hat{V}(\,\widehat{Y}) = \sum_{h\,=\,1}^{162} \frac{n_h}{n_h-1} (1-f_h) \sum_{i\,=\,1}^{n_h} \! \left(y_{hi.} - \overline{y}_{h..}\right)^{\!2}$$

. *h* : 설계층(경활)

.  $N_h$  : h층의 현재인구

.  $n_h$  : h층의 표본 조사구수

.  $f_h$  : 조사구 추출률

$$. \ y_{hi.} = \sum_{j=1}^{m_{hi}} w_{hij} \, y_{hij}$$

$$\bar{y}_{h..} = \left(\sum_{i=1}^{n_h} y_{hi.}\right) / n_h$$

$$SE(\hat{Y}_h) = \sqrt{\widehat{Var}(\hat{Y}_h)}$$

$$RSE = \frac{SE(\hat{Y}_h)}{\hat{Y}_h} \times 100 \text{ (\%)}$$

### □ 표준오차

- **(목표정도)** 실업자 RSE 평균('15~'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 하반기 고용조 사의 실업자 RSE는 4.0~89.9% 수준으로 예상
  - 실업자 RSE 최소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 은 3개 수준임
  - 예상 상대표준오차 산출식

$$RSE_2 = \sqrt{\frac{n_1}{n_2}} \times RSE_1$$

여기서  $n_1$ : 현재 표본수,  $n_2$ : 새로운 표본수,  $RSE_1$ : 현재 상대표준오차,  $RSE_2$ : 예상 상대표준오차임

### □ 충화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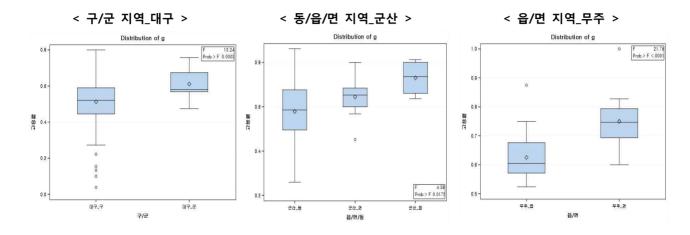
- 7개 특·광역시\* 및 154개 시군을 이용한 161개 지역층을 설계층으로 사용
  -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내 군지역은 광역시에 포함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상반기 (4월) 조사에 표본개편을 진행함에 따라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함
  - ※ 일반시의 각 비자치구(행정구)는 일반시로 통합하여 추출
  - ※ 추출리스트의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은 2015년 11월 1일 기준임

#### □ 분류지표

- (행정구역) 군을 포함하고 있는 4개 광역시 및 동읍면으로 구성된 도(시군) 의 행정구역별 고용률 차이를 검정한 결과,
  - 4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모두에서 구·군별 고용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동·읍·면을 포함하고 있는 133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구역 간 고용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현

## □ 모집단 분석 결과, 구·군<sup>광역시</sup> 및 동·읍·면<sup>시군</sup>의 고용 특성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1차 부류지표로 행정구역 구분 활용**

<그림 1> 행정구역 구분별 고용률 분포(예시)



- **(주택유형)** 주택유형\*에 따른 고용률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수행
  - \* 주택유형은 가구주 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설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 구분
  - 특광역시는 주택유형을 5개(단독, 아파트(소형·중형·대형), 기타)로 분류했을 때 고용률 차이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 도(시군) 지역은 지역에 따라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
    - \* 지역 내 단독 비중이 85% 이상인 신안군, 울릉군 등 25개 지역은 주택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 (충별 분류지표 선정) 경활상태와 연관성이 높은 분류지표 선정
  - 고용조사 표본은 경활표본과 별도표본을 결합한 형태이므로, 경활조사의 표본설계 시 적용한 분류지표\*를 중심으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탐색
    - \* 15~29세비율, 3~40대비율, 60세이상비율, 자가비율, 농림어가비율, 1인가구비율, 30세이상대졸자비율, 대졸자비율, 주택유형, 서비스업취업자비율, 광제조업취업자비율, 농림어업취업자비율
    - \*\* 추출틀 변경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분류지표는 6차 연동 표본설계 시 경활조사에 적용 적합 여부 검토 예정

- (상관분석) 인구 및 가구특성 관련 주요 변수 및 경활 분류지표에 대하 여 고용률 및 실업률과의 상관분석 수행
  - 13개 변수에 대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 특히 농가비율, 15~29세 비율, 65세 이상 비율 등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많은 층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시험
- **(회귀분석)** 상관분석 결과 도출된 13개 변수를 대상으로 층별 분류지표 선정을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 실시** 
  - \* 종속변수는 고용률임
  - 다중선형회귀모형에 변수선택법(stepwise)\*을 적용하여 층별 분류지표 선정
    - \* 변수선택시 변수제거 0.1(SLS), 변수추가 0.2(SLE) 기준 적용
- **(의사결정나무분석)** 분류변수의 중요도 파악 및 구분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변수 선택법으로 **선정된 변수를 포함하여 충별 의사결정나무분석** 수행
  - 선택된 변수들로만 의사결정나무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모든 변수를 이용하거나, 인근 지역에 선정된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 \* 양구군, 영암군, 완도군, 신안군
  - 군지역 분류지표에 농림어가비율이 빠진 경우에는 상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마지막 분류지표로 추가

#### □ 신뢰구간

- 25%이상~35%미만: 주의와 함께 사용 가능
- 35%이상: 공표시 신뢰 불가

# Ⅷ.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 공표통계항목

- 보도자료
  - 주요지표: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연 2회-2월,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연 2회 -4월, 10월)」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
  - 부가항목: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현황(6월)」,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현황 (11월)」,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12월)」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
- 통계표
  - 국가통계포털 KOSIS(http://www.kosis.kr/)에 공개
- 메타데이터
  - 마이크로데이터(http://www.mdis.kostat.go.kr/)에 공개

### □ 공표통계의 이용시 유의사항

- 다른 조사와의 비교
  - 주요지표

<표 8-2> 지역별고용조사 vs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조사목적	전국 및 16개 시도별 추정	9개도 155개 시군별 추정
**추정방법	성·연령그룹별 16개 시도 읍면·동별로 추계인구에 사후층화	성·연령그룹별 7개 특별·광역시와 155개 시 군별로 추계인구에 사후층화

## - 사회보험 가입현황

<표 8-3> 지역별고용조사 v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기준	4월 15일	6월(사업체 급여 계산기간)
조사	4월중 16일간	7월~9월
결과공표	11월	보도자료 익년 4월(보고서 6월)
조사단위	가구	사업체
조사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병행
조사대상	표본가구(201,000개)내 상주하는 15세이상 임 금근로자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부문의 전산업 중 표본사업체(약 32,000개)
• 제외	군인, 재소자 등만 제외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 군 · 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 · 국제 및 외국기관 · 개인운영 농림어업체 · 가사서비스업 ·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인부 ·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노점상, 포장마차 등)
장점	거의 모든 사업장과 직업이 대상	회계장부에 기록된 형태로 조사됨
단점	대리응답, 반올림 응답, 기억에 의한 응답 오차가 있음	· 공공기관·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인부 등이 조사에서 미파악 · 복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각각의 사업체에서 중복 계산됨

# □ 주요 공표 통계

<표 8-4> 연도별 시군별(수원·성남·의정부시) 주요지표

(단위: 천명, %)

항목	행정구역	'13.상	'13.하	'14.상	'14.하	'15.상	'15.하	'16.상	'16.하	'17.상
15세이상인구	수원시	929.8	940.8	958.5	970.1	981.6	988.7	1,000.7	1,008.0	1,015.1
	성남시	823.9	824.1	827.0	826.4	829.1	828.3	837.3	840.8	841.0
	의정부시	356.0	356.8	359.8	360.8	363.4	366.3	369.4	373.3	375.8
경제활동인구	수원시	563.4	563.7	582.9	582.2	607.1	610.4	610.1	606.5	611.0
	성남시	509.4	497.3	509.0	503.1	511.9	507.2	520.9	520.1	503.4
	의정부시	193.9	193.0	200.8	198.2	202.6	207.3	214.7	214.0	217.7
취업자	수원시	534.4	541.9	557.6	566.8	576.8	588.5	581.0	584.6	588.7
	성남시	486.4	479.8	485.7	482.7	489.2	489.8	503.2	502.1	489.4
	의정부시	189.9	187.3	194.6	194.9	195.3	200.2	206.1	205.0	206.6
실업자	수원시	29.0	21.8	25.3	15.4	30.3	21.9	29.1	22.0	22.3
	성남시	22.9	17.5	23.3	20.4	22.8	17.4	17.7	18.0	14.0
	의정부시	4.0	5.6	6.2	3.3	7.3	7.1	8.6	9.0	11.1
비경제활동인구	수원시	366.4	377.2	375.7	387.8	374.5	378.3	390.5	401.4	404.1
	성남시	314.6	326.8	318.0	323.3	317.1	321.1	316.4	320.6	337.7
	의정부시	162.0	163.8	159.0	162.6	160.8	158.9	154.7	159.3	158.1
경제활동참가율	수원시	60.6	59.9	60.8	60.0	61.8	61.7	61.0	60.2	60.2
	성남시	61.8	60.3	61.5	60.9	61.7	61.2	62.2	61.9	59.9
	의정부시	54.5	54.1	55.8	54.9	55.7	56.6	58.1	57.3	57.9
고용률	수원시	57.5	57.6	58.2	58.4	58.8	59.5	58.1	58.0	58.0
	성남시	59.0	58.2	58.7	58.4	59.0	59.1	60.1	59.7	58.2
	의정부시	53.4	52.5	54.1	54.0	53.7	54.7	55.8	54.9	55.0
15~64세 고용률	수원시	61.0	61.3	61.6	62.4	62.9	63.7	62.4	62.5	62.3
	성남시	63.3	62.9	63.7	63.6	64.2	64.4	65.3	64.9	64.0
	의정부시	59.5	58.7	60.6	60.4	59.9	61.0	62.4	61.6	61.7
실업률	수원시	5.1	3.9	4.3	2.7	5.0	3.6	4.8	3.6	3.6
	성남시	4.5	3.5	4.6	4.1	4.4	3.4	3.4	3.5	2.8
	의정부시	2.1	2.9	3.1	1.7	3.6	3.4	4.0	4.2	5.1

## <표 8-5> 2017년 상반기 시도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시도	계	A	В	С	D	Е	F	G	Н	I	J
계	26,577	1,355	21	4,441	84	101	1,961	3,773	1,396	2,266	786
서울	5,107	11	1	429	11	10	378	890	243	453	290
부산	1,661	14	0	283	7	8	145	250	120	157	27
대구	1,235	18	1	254	3	5	89	199	64	100	24
인천	1,523	4	1	353	5	8	123	218	107	123	41

광주	749	13	1	114	3	3	69	113	38	61	12
대전	769	10	-	90	5	5	62	114	42	59	23
울산	579	10	0	191	2	2	48	67	26	53	5
경기	6,678	131	1	1,309	14	22	481	993	364	551	263
강원	<i>7</i> 97	91	12	54	4	3	63	94	34	91	15
충북	851	96	2	165	2	4	61	89	36	75	12
충남	1,280	147	1	282	10	6	90	125	59	97	16
전북	906	154	0	115	3	5	60	105	37	64	13
전남	921	204	1	96	4	4	73	110	49	72	6
경북	1,425	233	1	276	5	8	92	159	66	109	16
경남	1,721	167	0	419	6	8	93	200	91	154	19
제주	376	52	0	12	1	1	37	48	22	46	8

시도	K	L	M	N	О	Р	Q	R	S	T	U
계	770	626	1,097	1,264	1,032	1,927	1,912	415	1,269	70	11
서울	213	161	419	302	164	433	343	99	252	4	3
부산	45	42	45	84	55	126	135	23	89	10	-
대구	41	24	27	47	48	99	97	16	70	8	2
인천	40	35	44	99	46	81	101	20	74	2	1
광주	23	18	18	26	35	71	75	9	41	5	-
대전	24	19	47	41	34	66	72	11	40	5	-
울산	12	10	13	28	16	34	31	6	22	2	-
경기	171	170	346	339	184	479	429	114	302	12	5
강원	19	14	14	30	63	60	75	18	41	2	-
충북	20	17	19	38	36	61	67	11	39	3	-
충남	29	24	25	64	56	82	88	18	59	4	0
전북	29	14	15	28	53	71	88	12	41	1	-
전남	22	10	11	21	58	49	73	9	47	2	-
경북	33	24	19	38	76	83	103	15	64	7	1
경남	38	37	29	57	85	107	108	25	73	6	-
제주	12	7	7	21	23	24	29	10	17	-	-

※ A.농림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도매및 소매업, H. 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가구내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 <표 8-6> 2015~2016년 시도 맞벌이 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단위: 선가구, %)
시점	시도별	유배우가구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비율
2015	전국	11,858	5,206	43.9
	서울특별시	2,191	839	38.3
	부산광역시	805	302	37.6
	대구광역시	590	243	41.3
	인천광역시	652	268	41.1
	광주광역시	351	157	44.8
	대전광역시	363	152	41.9
	울산광역시	281	107	37.9
	경기도	2,866	1,175	41.0
	강원도	374	191	51.0
	충청북도	386	207	53.8
	충청남도	528	277	52.3
	전라북도	440	221	50.2
	전라남도	447	261	58.4
	경상북도	659	346	52.5
	경상남도	802	383	47.7
	제주특별자치도	125	77	61.4
2016	전국	11,884	5,331	44.9
	서울특별시	2,188	877	40.1
	부산광역시	801	301	37.6
	대구광역시	588	252	42.9
	인천광역시	655	273	41.7
	광주광역시	351	150	42.7
	대전광역시	364	156	42.9
	울산광역시	282	106	37.6
	경기도	2,889	1,229	42.5
	강원도	375	196	52.4
	충청북도	388	208	53.7
	충청남도	532	284	53.3
	전라북도	440	222	50.5
	전라남도	446	258	57.9
	경상북도	658	355	53.9
	경상남도	804	390	48.5
	제주특별자치도	124	75	60.3

## <표 8-7> 2015~2016년 시도 사회보험 가입 현황

(단위: 천명, %)

지점 행정구역반 임금모자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국 19,467 70.2 73.6 71.1  서울특별시 4,011 71.2 74.5 72.1  무산광역시 1,285 66.6 71.0 69.2  대구광역시 902 62.6 66.3 62.5  인천광역시 1,243 67.7 70.3 69.0  한국광역시 540 70.5 72.6 70.6  대전광역시 619 72.0 74.2 70.9  울산광역시 458 74.4 78.4 77.3  경기도 5.094 71.3 75.0 72.2  강원도 507 69.5 73.0 69.1  충청부도 578 72.3 75.4 73.1  충청부도 822 73.5 76.1 73.0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전상부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시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부산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윤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강원도 525 76.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76.6 67.7 77.6 75.8  전라막도 593 69.7 74.8 71.7  중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막도 579 69.5 74.1 71.5  경상부도 1,156 72.4 77.6 75.4  세수특별자치도 257 66.7 69.6 65.9						(단위: 선명, 26)	
사용특별시 4,011 71.2 74.5 72.1  부산광역시 1,285 66.6 71.0 69.2  대구광역시 902 62.6 66.3 62.5  인천광역시 1,243 67.7 70.3 69.0  광주광역시 540 70.5 72.6 70.6  대천광역시 619 72.0 74.2 70.9  윤산광역시 458 74.4 78.4 77.3  경기도 5,094 71.3 75.0 72.2  강원도 507 69.5 73.0 69.1  충청탁도 578 72.3 75.4 73.1  충청탁도 822 73.5 76.1 73.0  전라탁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사용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천광역시 622 72.0 76.3 73.9  윤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탁도 593 69.7 74.8 71.7  表청탁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538 61.6 67.0 64.0	시점	행정구역별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산광역시 1,285 66.6 71.0 69.2 대구광역시 902 62.6 66.3 62.5 인천광역시 1,243 67.7 70.3 69.0 광주광역시 540 70.5 72.6 70.6 대전광역시 619 72.0 74.2 70.9 울산광역시 458 74.4 78.4 77.3 73.1 75.0 72.2 장원도 50.94 71.3 75.0 72.2 장원도 57.8 72.3 75.4 73.1 중청남도 822 73.5 76.1 73.0 69.1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전상북도 90.8 70.8 74.2 71.4 전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투발사치도 225 62.9 65.1 62.0 전국 19.779 69.6 74.8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전원도 525 66.6 73.4 69.1 73.9 전원도 525 66.6 73.4 69.1 74.8 74.1 75.2 전원도 525 66.6 73.4 69.1 74.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4.1 75.1 75.1 74.1 75.1 75.1 75.1 75.1 75.1 75.1 75.1 75	2016	전국	19,467	70.2	73.6	71.1	
대구광역시 902 62.6 66.3 62.5 인천광역시 1,243 67.7 70.3 69.0 경구광역시 540 70.5 72.6 70.6 대천광역시 619 72.0 74.2 70.9 음산광역시 458 74.4 78.4 77.3 경기도 5,094 71.3 75.0 72.2 강원도 507 69.5 73.0 69.1 충청북도 578 72.3 75.4 73.1 충청남도 822 73.5 76.1 73.0 전라북도 574 68.7 72.0 68.4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건상북도 908 70.8 74.2 71.4 건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구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전국 19.779 69.6 74.8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71.7 69.8 중구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천광역시 622 72.0 76.3 73.9 을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건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93 69.7 74.8 71.7 表为计도 894 74.1 78.5 75.8 진라북도 579 69.5 74.1 71.5 진라북도 538 61.6 67.0 64.0 건상북도 516 70.7 76.0 73.2		서울특별시	4,011	71.2	74.5	72.1	
인원광역시 1,243 67.7 70.3 69.0 광주광역시 540 70.5 72.6 70.6 대원광역시 619 72.0 74.2 70.9 공산광역시 458 74.4 78.4 77.3 경기도 5,094 71.3 75.0 72.2 강원도 507 69.5 73.0 69.1 충청북도 578 72.3 75.4 73.1 중청남도 822 73.5 76.1 73.0 전라북도 574 68.7 72.0 68.4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전국 19,779 69.6 74.8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72.8 69.4 대권광역시 565 69.0 72.8 69.4 대권광역시 622 72.0 76.3 73.9 26.4 69.1 강원도 525 66.6 73.4 69.1 건강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건강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건강남도 1,156 72.4 77.6 75.4		부산광역시	1,285	66.6	71.0	69.2	
광주광역시 540 70.5 72.6 70.6 대전광역시 619 72.0 74.2 70.9 을산광역시 458 74.4 78.4 77.3 경기도 5.094 71.3 75.0 72.2 강원도 507 69.5 73.0 69.1 응청북도 578 72.3 75.4 73.1 중청남도 822 73.5 76.1 73.0 전라락도 543 64.3 67.3 65.9 전상북도 908 70.8 74.2 71.4 전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전라막자기도 225 62.9 65.1 62.0 대구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71.7 69.8 관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전상막도 51.87 71.8 76.9 74.1 장원도 525 66.6 73.4 69.1 중청북도 593 69.7 74.8 71.7 등청 전라북도 599 69.5 74.1 78.5 75.8 전라락도 594 64.0 73.2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73.2 73.5 75.4		대구광역시	902	62.6	66.3	62.5	
대전광역시 619 72.0 74.2 70.9  윤산광역시 458 74.4 78.4 77.3  경기도 5.094 71.3 75.0 72.2  강원도 507 69.5 73.0 69.1  충청북도 578 72.3 75.4 73.1  충청남도 822 73.5 76.1 73.0  전라박도 574 68.7 72.0 68.4  전라박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박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전국 19,779 69.6 74.8 71.9  서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일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윤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박도 579 69.5 74.1 71.5  전라박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낙도 916 70.7 76.0 73.2		인천광역시	1,243	67.7	70.3	69.0	
울산광역시   458		광주광역시	540	70.5	72.6	70.6	
장원도 5,094 71.3 75.0 72.2  강원도 507 69.5 73.0 69.1  충청북도 578 72.3 75.4 73.1  충청남도 822 73.5 76.1 73.0  천라남도 574 68.7 72.0 68.4  천라남도 543 64.3 67.3 65.9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전국 19,779 69.6 74.8 71.9  서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항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천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천라남도 538 61.6 67.0 64.0  청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대전광역시	619	72.0	74.2	70.9	
장원도 507 69.5 73.0 69.1 중청부도 578 72.3 75.4 73.1 중청남도 822 73.5 76.1 73.0 전라북도 574 68.7 72.0 68.4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전라 목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일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공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중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73.2 건상남도 916 70.7 76.0 73.2 건상남도 916 70.7 76.0 73.2 건상남도 916 70.7 76.0 73.2		울산광역시	458	74.4	78.4	77.3	
등청부도 578 72.3 75.4 73.1 등청남도 822 73.5 76.1 73.0 전라북도 574 68.7 72.0 68.4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전국 19,779 69.6 74.8 71.9 사윤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일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중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73.2 73.2 73.2 73.2 73.2 73.2 74.5 71.5 75.4		경기도	5,094	71.3	75.0	72.2	
충청남도 822 73.5 76.1 73.0 전라북도 574 68.7 72.0 68.4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사용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을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916 70.7 76.0 73.2		강원도	507	69.5	73.0	69.1	
전라남도 574 68.7 72.0 68.4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사율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윤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강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충청북도	578	72.3	75.4	73.1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서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윤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충청남도	822	73.5	76.1	73.0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천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전라북도	574	68.7	72.0	68.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서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천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전라남도	543	64.3	67.3	65.9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서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선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경상북도	908	70.8	74.2	71.4	
전국 19,779 69.6 74.8 71.9  사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성남도 1,156 72.4 77.6 75.4		경상남도	1,157	73.8	76.6	75.0	
서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제주특별자치도	225	62.9	65.1	62.0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장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2017	전국	19,779	69.6	74.8	71.9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서울특별시	4,065	69.2	75.1	71.9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부산광역시	1,297	64.6	71.0	66.3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대구광역시	892	64.8	69.7	66.3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인천광역시	1,233	66.7	71.7	69.8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광주광역시	565	69.0	72.8	69.4	
경기도 5,187 71.8 76.9 74.1 강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대전광역시	622	72.0	76.3	73.9	
장원도 525 66.6 73.4 69.1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울산광역시	461	72.6	77.0	75.2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경기도	5,187	71.8	76.9	74.1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강원도	525	66.6	73.4	69.1	
전라북도 579 69.5 74.1 71.5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충청북도	593	69.7	74.8	71.7	
전라남도 538 61.6 67.0 64.0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충청남도	894	74.1	78.5	75.8	
경상북도 916 70.7 76.0 73.2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경상남도 1,156 72.4 77.6 75.4							
제주특별자치도 257 66.7 69.6 65.9							
		제주특별자치도	257	66.7	69.6	65.9	

#### <표 8-8> 연도별 1인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2014		2015	5	2016	
산업별	취업가구	구성비	취업가구	구성비	취업가구	구성비
계	2,736	100.0	2,843	100.0	2,909	100.0
농림어업	253	9.3	249	8.8	239	8.2
광·제조업	436	15.9	448	15.8	431	14.8
건설업	198	7.2	201	7.1	228	7.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84	21.3	623	21.9	640	22.0
전기,운수,통신,금융	252	9.2	275	9.7	289	9.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13	37.0	1,047	36.8	1,083	37.2

## <표 8-9> 2017년 자녀동거 취업여성 현황

(단위: 천명, %)

행정구역별	자녀동거 여성	자녀동거 취업여성	시도별 고용률	
전국	5,094	2,854	56.0	
서울특별시	925	512	55.4	
부산광역시	298	161	54.2	
대구광역시	240	142	59.4	
인천광역시	298	158	53.1	
광주광역시	168	102	61.0	
대전광역시	164	93	56.5	
울산광역시	127	61	48.3	
경기도	1,396	757	54.2	
강원도	129	81	62.5	
충청북도	155	97	62.5	
충청남도	252	143	56.6	
전라북도	163	98	60.1	
전라남도	143	82	57.4	
경상북도	232	130	56.0	
경상남도	335	183	54.6	
제주특별자치도	71	54	76.9	

#### <표 8-10> 연령대별/사유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천명, %)

					(단위: 천명, %)
연령대별	사유별	2014	2015	2016	2017
계	경력단절여성	2,139	2,053	1,906	1,812
	- 결혼	822	757	659	625
	- 임신.출산	436	501	502	451
	- 육아	627	614	574	581
	- 자녀교육	93	80	79	75
	- 가족돌봄	162	101	92	81
15 - 29세	경력단절여성	191	177	161	147
	- 결혼	76	68	60	52
	- 임신.출산	60	59	60	56
	- 육아	51	49	39	38
	- 자녀교육	1	0	1	0
	- 가족돌봄	3	1	1	1
30 - 39세	경력단절여성	1,116	1,090	1,012	928
	- 결혼	392	346	312	281
	- 임신.출산	278	314	311	274
	- 육아	393	388	352	339
	- 자녀교육	32	30	27	25
	- 가족돌봄	21	13	9	9
40 - 49세	경력단절여성	639	611	587	590
	- 결혼	272	260	220	224
	- 임신.출산	85	111	115	106
	- 육아	157	153	160	178
	- 자녀교육	50	42	45	43
	- 가족돌봄	76	45	47	40
50 - 54세	경력단절여성	192	174	146	147
	- 결혼	83	83	67	68
	- 임신.출산	14	18	16	15
	- 육아	25	24	23	27
	- 자녀교육	10	8	6	7
	- 가족돌봄	61	41	34	31

# 2. 시의성 및 정시성

#### 2-1 조사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 조사대상 및 통계공표 시점

- 조사대상 시점
  - 조사대상기간: 15일(조사기준일)이 포함된 1주 7일간(일~토)
  - 조사실시기간: 조사대상기간 이후 날부터 약 16일간
  - 조사주기: 반기(4월과 10월)
- 통계공표 시점
  - 주요지표: 시군별 주요고용지표(8월, 익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0월, 익년 4월)
  - 부가항목: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현황(6월),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현황(11월),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12월)

### □ 조사과정별 소요시간(2017년 상반기 기준)

	2 4 2] 7]	3 A A) []
	소요시간	주요업무
		▶조사세부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나라통계시스템 개선
	3개월	▶조사구 적격심사 및 요도보완
조사준비	(1~3월)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1~0垣)	▶조사원, 조사관리자 등 채용
		▶교관단 및 조사원 등 교육
		▶조사홍보
		▶인터넷조사(기간중 5일)
조사	16일(4.23~5.9)	▶면접조사(기간중 16일)
		▶실사지도
	3개월	▶지방청 조사표 입력 및 내검
내검 및 입력(1~2차)	(1차: 5.14~5.31	▶본청 산업 및 직업분류 내검
	2차: 6~8월)	▶내검 실사지도
	▷'17년 6월	▶주요 고용지표 공표
	▷'17년 10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주요특성
보도자료 공표	▷'17년 11월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17년 12월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 □ 기간 단축 가능성

- 2017년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1개월 공표기간 기 단축(12월→11월)
- 주요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공표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통계조사 선진화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임
  - 현재까지는 단축 가능성은 높지 않음

### □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결과(※소지역 추정방법 검토)

- (추정방법)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수 자료를 보조변수로 활용하여 시·군별 고용률과 실업률을 추정
- (연구결과) 고용률은 모든 시·군에서 대부분 안정적으로 추정되는 반면, 실업률의 경우 인구수가 적은 군단위 지역의 CV가 매우 높게 나타남
  - ※ 고용통계 소지역 추정 연구(2010년 통계개발원) 참조

### 2-2 공표일정

### □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공개 일정

○ 보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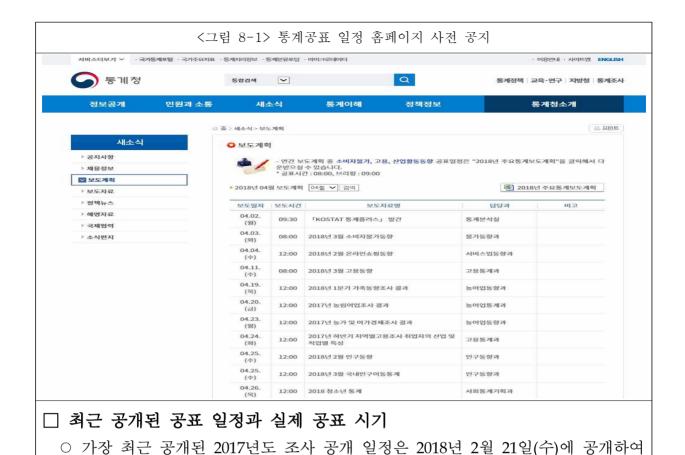
월	보도일자	보도시간 (엠바고)	배포일자	배포시간	브리핑일자	브리핑시간	KOSIS 서비스	주기
2월	2.21.(수)	12:00	2.21.(수)	09:00	2.21.(宁)	10:00	공표와 동시	Н
4월	4.24.(화)	12:00	4.24.(화)	09:00	-	-	공표와 동시	Н
6월	6.21.(목)	12:00	6.21.(목)	09:00	-	-	공표와 동시	Y
8월	8.29.(수)	12:00	8.29.(수)	09:00	8.29.(수)	10:00	공표와 동시	Н
10월	10.23.(화)	12:00	10.23.(화)	09:00	-	-	공표와 동시	Н
11월	11.29.(목)	12:00	11.29.(목)	09:00	-	-	공표와 동시	Y
12월	12.7.(금)	12:00	12.7.(금)	09:00	-	-	공표와 동시	Y

#### □ 최근 공개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 시기

○ 가장 최근 공개된 2017년 조사자료에 대한 예정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일정은 동일

### □ 최근 공개된 공표 일정

- 공개일정
  - 매년 월별(1~12월) 공개
- 공개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새소식/보도 계획에 보도일자, 보도시간, 보도자료명, 담당과 등 공개
  - 월별로 검색 가능



## 3. 비교성 및 일관성

##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일정대로 공표를 완료함

### □ 통계 적용 기준

- 일반사항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조사기준, 조사시기는 매 반기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조사 결과의 비교와 일관성 있는 통계 분석 가능
- 주요 기준 내용
- 1) 통계의 개념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와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 제공
- 2) 분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등
- 3) 조사 기준
- 전국 20만 1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조사

- 4) 조사시기
  - 매년 4월, 10월

#### 3-2 시계열 비교성

#### □ 시계열 단절

-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절
  - (1차)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2010년까지 연간조사(9월, 10월 기준)에서 2011년부터 분기조사(3월, 4월, 9월, 12월)로 전환
  - **(2차)** 2011년~2012년까지 분기조사에서 다시 2013년 이후 반기조사로 전환
- 모집단의 조사기법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절
  - 2017년 하반기(10월) 등록센서스 기반 가중치 적용으로 이전자료와의 시계열 단절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사통계 기반으로 작성된 통계는 2017년 상반기(4월) 조사까지만 활용 가능하므로 등록센서스 기반의 시계열 정비된 자료 활용을 권장(2008년부터 자료 정비 완료)

### 3-3 국가간 비교성

#### □ 국외 주요 지역별노동력조사 비교

- 영국(Labour Force Survey(LFS))
  - 영국의 LFS는 1973년부터 53,000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되는 조사로 만 16세 및 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개발, 관리, 평가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표주기는 분기별과 매월 두가지 방법이 있다.
    - •첫 조사는 직접 CAPI면접을 통해 실시이후 면접조사는 훈련된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면접관들이 전화 면접을 통해 실시
    - 질문은 핵심질문(매년 조사에 포함)과 비 핵심질문(분기별 변화)으로 구성.두 개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된 질문
      - 가) 첫 부분 가구원, 가족구성, 기본 집 정보, 인구통계학 세부사항의 개인에 관한 기본 정보를 포함.
      - 나) 둘째부분 가구원 중 어른을 대상 : 경제활동 및 비 활동, 고용, 실업, 불완전고용, 교육의정도 및 훈련, 노동이동성, 무역연합단체, 현재 노동의 상태, 노동시간, 건강 등의 정보를 포함
- 미국(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 미국의 ACS는 2005년부터 매월 25만 가구(연간 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되는 조사로 인종, 소득, 통근, 고용현황, 군복무, 주택, 기타항목에 대하여 10년마다 제공되었던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기 위함

### <표 8-11> 국가별 지역별고용조사 현황 비교

구분	한국	اه	국	캐나다	프랑스
통계명	지역별 고용조사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Labour Force Survey(LFS)	Enquête Emploi en continu depuis
통계종류	조사통계	조사통계 (소지역 고용 통계관련 정보)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표본규모	175,000 가구	60,000 가구	매월 25만 가구 연간 3백만 가구	54,000가구	15세 이상 7만 2천명 38,000가구
조사기관	통계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Census Bureau	Statistics Canada	INSEE
조사주기	1년	월간조사	월간조사	월간조사	분기별 조사 (2003년 이전 연간 조사)
조사대상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만 16세 이상 가구원	가구 내의 모든 가구원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가구의 15세 이상 인구
조사방법	표본조사	표본조사 보조정보 사용 (실업보험자료)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주요연혁	2008년(10월)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942년 시작	2005년 시작	1945년 시작	1950년 시작
공표방법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보고서 발간	매월 보고서 발간	규모에 따라 매년, 매3년, 매5년, Census Bureau에서 공개	매월 Statistics Canada's Website	분기별 보고서 발간, 분기별 또는 연간 간행물.

구분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네덜란드
트게머	Labor Force	Employment	ILO labour	Labour Force	Dutch Labour Force
통계명	Survey(LFS)	Status Survey	market statistics	Survey	Survey(LFS)
통계종류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표본규모	분기별 53,000가구	약 450,000 가구로 부터 표본추출	연간 380,000가구 (월 15,000~ 25,000가구)	22,800 가구	2007년, 67만 가구
조사기관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총무성 통계국	Federal Statistical Offi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조사주기	월간조사 (분기별 조사)	5년 주기	매월	월간조사	월간조사
조사대상	가구의 16세 이상 가구원	가구의 15 세 이상 가구원	가구의 15세~74세 인구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40 11 5	40 115	표본조사(서면조사표	7112	7112
조사방법	표본조사	표본조사	및 OMR조사표/표본 조사, 면접타계식 과 자계식 병행)	표보조사 (면접-자계식 본인 및 대리인, 설문지)	표본조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인터뷰 실시)
주요연혁	1973년 시작	1956년(3년 주기 조사 시작)	1957년 시작 2005년 the Micro census Law의 개정.	1960년 분기별 조사 1978년 2월 월간조사	1973년 시작
공표방법	매월 보고서 발간 (3개월 조사 후 1.5개월 후 발표)	익월 말일, 보도자료 및 테이블 홈페이지 게시	매월 보도자료 및 테이블 홈페이지 게시	조사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보도자료 및 테이블 홈페이지 게시	월별 잠정치 분기, 연간 수치는 정확함.

#### □ 주요 국가간 통계표 비교

<그림 8-2> OECD 주요 국가 실업률 비교

Table 3: Unemployment Rates by Age, s.a. Percentage of corresponding active population

7	1		Youth	(15-24)			Prin	Prime-age and Older Workers (25+)				
	2017	20	17	20	17	2018	2017	20	17	2017		2018
	- 2	Q3	Q4	Nov	Dec	Jan		Q3	Q4	Nov	Dec	Jan
OECD - Total	12.0	11.8	11.7	11.8	11.6	11.4	5.0	4.9	4.8	4.8	4.7	4.7
Major Seven	10.7	10.5	10.5	10.7	10.3	10.2	4.3	4.3	4.1	4.1	4.1	4.0
European Union	16.9	16.6	16.4	16.4	16.3	16.1	6.7	6.6	6.4	6.4	6.4	6.4
Euro area	18.8	18.5	18.1	18.1	17.9	17.7	8.2	8.0	7.8	7.8	7.8	7.8
						استستانا						
Australia	12.6	12.7	12.3	12.4	12.3	12.3	4.2	4.1	4.1	4.0	4.2	4.1
Austria	9.8	9.6	9.7	10.0	9.5	9.4	4.9	4.9	4.9	4.9	5.0	5.0
Belgium (1)	19.2	18.3	16.3	16.3	16.3		6.2	6.2	5.9	5.9	5.8	5.8
Canada	11.6	10.9	10.9	11.0	10.5	10.9	5.5	5.4	5.2	5.1	5.0	5.0
Chile	16.9	17.4	16.9	16.9	17.3		5.5	5.2	5.7	5.7	5.7	
Czech Republic	7.9	7.6	5.6	5.2	5.3	5.8	2.6	2.4	2.2	2.2	2.2	2.2
Denmark	11.0	11.2	9.9	9.7	10.1	10.4	4.8	4.7	4.6	4.6	4.4	4.3
Estonia	12.2	11.0	7.1	6.8	6.5		5.2	5.3	5.2	5.2	5.5	
Finland	19.9	19.7	19.0	19.0	18.8	18.7	7.1	7.1	7.1	7.1	7_1	7.1
France	22.3	22.2	21.8	21.7	21.7	21.7	8.1	8.2	7.7	7.7	7.6	7.6
Germany	6.9	6.7	6.7	6.7	6.7	6.6	3.4	3.4	3.3	3.3	3.3	3.2
Greece		40.3		43.7		i i		19.8		19.6		
Hungary	10.8	11.1	10.6	10.5	10.7		3.6	3.6	3.4	3.4	3.2	
loeland	8.0	7.6	7.4	7.4	7.3	7.1	1.8	1.7	1.9	1.9	1.9	2.0
Ireland	14.7	15.4	14.2	14.1	13.8	13.7	5.7	5.6	5.4	5.4	5.3	5.2
Israel	7.3	8.0	7.2	7.6	8.4	5.8	3.6	3.5	3.7	3.8	3.5	3.3
Italy	34.9	34.5	33.4	33.1	32.8	31.5		9.7				
Japan	4.7	4.8	4.5	4.3	4.6	3.3	2.7	2.6	2.6	2.6	2.6	2.3
Korea	10.3	10.1	10.4	10.6	9.9	9.4	3.2	3.2	3.2	3.2	3.3	3.2
Latvia	17.0	15.9	17.7	17.9	18.0	17.9	8.1	8.1	7.6	7.6	7.6	7.6
Luxembourg	15.4	15.0	14.1	14.1	14.4	14.1	4.8	4.8	4.7	4.7	4.7	4.6
Mexico	6.9	6.8	7.0	6.9	7.2	6.5	2.7	2.6	2.7	2.8	2.6	2.6
Netherlands	8.9	8.7	7.9	7.8	8.0	7.4	4.1	4.0	3.7	3.7	3.7	3.6
New Zealand	12.7	13.1	12.4			0	3.2	3.1	3.0			
Norway	10.3	10.3	9.8	9.9	9.4		3.3	3.1	3.2	3.2	3.3	
Poland	14.8	14.7	14.7	14.7	14.5	14.1	4.1	4.0	3.7	3.7	3.7	3.6
Portugal	23.8	24.1	23.2	22.8	22.2	22.2	7.9	7.5	7.0	6.9	6.9	6.8
Slovak Republic	18.6	18.6	17.4	17.3	17.1	17.1	7.3	7.1	6.8	6.8	6.8	6.7
Slovenia (1)	11.7	11.8	12.1	12.1	12.1		6.4	6.2	5.8	5.8	5.7	5.5
Spain	38.7	37.8	37.2	37.1	36.8	36.0	15.7	15.3	15.1	15.1	15.0	14.8
Sweden	17.7	18.3	17.2	17.3	17.6	16.8	5.2	5.2	5.1	5.0	5.0	5.2
Switzerland	8.1	8.5	7.5				4.3	4.3	4.4			
Turkey		20.7		19.5				8.9		8.5		
United Kingdom		12.0		12.4				3.1		3.1		
United States	9.2	9.0	9.2	9.6	8.9	9.2	3.6	3.6	3.3	3.3	3.4	3.4

### □ 국제기구 등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및 제공항목 등

국제기구명	제공항목
ADB(아시아개발은행)	전국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수
UNESCO	산업 및 직업(문화, 비문화), 성, 연령, 교육
OECD	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구간 취업자수

##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사회보험 가입현황)
  - 조사개요
    -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 근로 (재택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관련 정책 및 연

구에 활용되며, 그 중 주업·부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률에 대해 조사

- 매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약 34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작성주기 : 매년 11월
- 차이점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직종으로 구분하여 사회보험가입률 공개
- 유사점 : 매년 11월에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공개

####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조사

- 조사개요
  - 고용형태별근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부문의 전산업 분야의 사업 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 조사
  - 매년 6월 기준 약 3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보고서 : 익년도 6월
  - 차이젂
    - 고용형태별근로조사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일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사회보험가입률 공개
    - 공공기관·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인부 등을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며, 복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각각의 사업체에서 중복 계산됨
    - 유사점 : 매년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시계열 유지 가능
    - 조사결과 : 고용형태별근로조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약 15~20%p 많게 나타남 이는 고용형태별근로조사의 조사 대상이 법적용대상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반면 지역별고용조사의 대상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임

<표 8-12> 지역별고용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조사의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단위: %)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A)	70.2
국민연급	고용형태별(B)	90.7
	차이(B-A)	20.5
건강보험	지역별고용조사(A)	73.6
	고용형태별(B)	89.7
	차이(B-A)	16.1
	지역별고용조사(A)	71.1
고용보험	고용형태별(B)	90.1
	차이(B-A)	19.0

#### 3-5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내용 비교
  - 개요 : 국민의 경제활동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 한 자료를 작성
  - 유사점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항목 48개 중 인적사항,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등 20여개의 조사항목이 지역별고용조사 항목과 일치
    - 조사방법, 조사기준, 조사단위, 조사체계 등이 유사
  - 차이점
    - 표본규모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약 34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주기 : 매월
    - 간행물 발간주기 : 월보, 연보
    - 공표단위 : 전국, 시도
    - 통계청 조사직원이 직접 조사
    - CATI, CAPI를 이용한 조사 병행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전국 및 시도 단위의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9개도 154개 시군 단위의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참조

### 4. 접근성 및 명료성

###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공표기일 기준으로 보도자료 결과 공개
- 경로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 □ KOSIS 통계표, 통계설명자료 업로드

- 가장 최근 공표자료를 기준으로 통계표 제공
- 경로 : http://:www.kosis.kr/

#### 4-2 연락처 정보

####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정보

	직위/직급	전화번호
<u> </u>	과장	042-481-2264
김〇〇	사무관	042-481-2271
김○○	주무관	042-481-2303
<b>○</b>  ○○	주무관	042-481-2525
문()()	주무관	042-481-2295
곽00	주무관	042-481-3861
정 0 0	주무관	042-481-3863

###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에 메타 정보 제공

### 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제공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통계청 홈페이지 가입시 이름과 이메일 등의 간단한 정보만 필요함
- 구입 소요시간
  - 간단한 절차를 통한 가입 후 다운로드,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단, 맞춤형 집계 형식의 경우 평균 1주일 소요
- 자료제공 포맷
  - SPSS, SAS, STATA
- 자료 제공 레이아웃
  - 엑셀로 작성된 레이아웃 제공
- 제공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mdis.kostat.go.kr/)

#### ※ 용어해설

○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통계기초자료) :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오

류 등을 제거한 기초 데이터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에 사용되는 자료

-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Public Use Micro Data) :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응답자가 식별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된 자료
- 승인된 마이크로데이터(Licensed Micro Data) : 자료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이용 가능한 자료

#### 6. 비밀보호 및 보안

###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 자료수집

- (조사원) 보안서약서 작성
  - 조사원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제출
  - ①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②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③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알리고 업무 전달을 받는다.
  -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 (응답자 보호) 통계법에 의한 비밀 보호보안서약서 작성
  -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철저히 보호

#### □ 자료 처리 및 보관

- 조사표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명시
  -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원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조사표(요도, 명부 포함)를 통계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
    - 조사표 미제출 등 조사 의무 불이행 시 징계 또는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될 수 있음을 안내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징계), 제24조(징계의 종류)
    -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조사표는 지방통계청(사무소포함)에서 일정기간(3년) 보관 ???
    -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 훈령)」제9조(조사표류 제출 의무)
- 데이터
  - 가구 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한 공개 데이터 작성

####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 공표자료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 조치와 방법

- 무작위 일련번호 부여
  - 가구 ID를 무작위로 부여
- 식별 가능 조사항목 비공개
  - 가구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구원 번호, 생년월일 등 가구 식별가능한 변수를 모두 제외한 후 공개
- 결과자료
  - 취업자 등 규모는 백명 단위로 공개

###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 내부자료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 자료의 수집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통계법 제33조, 제34조)
  -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참고 | 통계법(발췌)

- 제 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 자료의 처리 및 보관

- 조사된 자료는 자료처리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자료처리시스템의 프로 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 나라통계시스템 수탁업체 : 누림소프트, 유코아시스템, 오션정보기술, 지엔소프트, 인아이티

### 7. 통계활용 실태

### □ KOSIS 이용실적

○ 연도별 KOSIS 이용실적

 연도별	이용자 수
 2017년	242,645건
2016년	175,977건
2015년	138,154건
2014년	156,411건
2013년	92,220건
2012년	62,477건

※ 2017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실적 : 2,903건

## ™. 통계기반 및 개선

#### 1. 기획 및 분석 인력

- □ 지역별고용조사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2. 사업예산

### □ 예산현황(2018년 기준)

- 총 예산 : 72억원
  - 인건비 : 64억원(일용임금 17억원, 도급조사 46억원, 고용부답금 7천만원)
  - 기타 운영비 : 3억원(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등)
  - 공공요금 : 1억원
  - 임차사무실 운영 : 1억 9천만원
  - 특근매식 : 1천만원
  - 실사지도 및 교육여비 : 2억원
  - 업무협의 및 간담회 : 1천만원
- □ 예산증액 및 조정 필요성
- 기타 운영비 : **1억원** 
  - (산출근거) 세종시 표본 1,000가구 증가, '18년 기타 운영비 예산 6천만원, 공공요금 2천만원 등 기 감액
  - 표본가구수는 늘어나고 물가인상으로 단가는 매년 인상되는 반면 '18년 전체 기타 운영비(18%), 공공요금(20%), 업무추진비(15%) 감액
- 조사대상처에 사전안내문 발송 : +150백만원(공공요금)
  - (산출근거) 167,320가구 × 450원 × 2회 = 151백만원
  - 조사환경 악화에 따른 조사대상처의 불응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조사대상처에 조사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불응 최소화 필요

※불응률: 3.7%('10)→5.7%('11)→5.8%('12)→6.7%('13)→7.0%('14)→8.3%('15)→9.9%('16상) →11.2%('16하)

- 특히, 응답대상처에서 사전안내장 미발송에 따른 불만 민원 증가

<국민신문고 1AA-1704-224031>

…지역별고용조사에 대해 현수막이나 기타정보를 보고, 각자 알아서 참여해야 하는건지요? 조사에 참여자만이라도, <u>조사가 시작되니 참고하시라는 안내문을</u> 사전에 보내주면,...<중략>...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는 미안하지만, 매우 불쾌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이하생략>

### 3. 통계위탁 조사

□ 해당없음

## 4. 자료처리 시스템

#### □ 자료입력

- 나라통계 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처리
  - CASI 시스템을 활용 조사 병행
  - 나라통계시스템 수탁업체 : 누림소프트, 유코아시스템, 오션정보기술, 지엔소프트, 인아이티
  - 나라통계시스템 전산장비 현황

구분	용도	종류 및 사양	관리주체
		WAS: Weblogic 11g	
장비	일반 전산업무	웹서버: Sunone 6.1	
9 4	클린 선건급구 	DB: 엑사데이터DB	
		OS: IBM AIX 6	
		파일복제 S/W: BCFSync4.0.7	
		리포팅 S/W: OZ(내·외부 1번 서버에만 설치)	E 22
CW	이비 괴치어무	검색 S/W: Search Formula-1 Intergrated	통계청
SW	일반 전산업무	Searcher v4.5.1	
		WAS 성능관리:Jennifer	
		DB암호화: Ksign	
프로그램 언어	일반 전산업무	java1.7.jsp	

#### □ 자료분석

- 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종류
  - 전산장비

장비명	용도	종류 및 사양	관리주체
		기종: 대우루컴즈컴퓨터 솔로탑G-2TG	
		CPU: Intel Core i5 4590	
데스크톱	조사 관련 업무	메모리:4.00GB	개인사용자
컴퓨터	조사 원인 함도 	시스템 종류: 32bit	통계청
		HDD: 500G	
		OS: Windows 7 Home Ptemium K	

#### ■ 소프트웨어

제품명	버전	용도	관리주체
CAC	9.3	통계 분석 패키지	개인 사용자
SAS	서버용	(집계, 추정, 분석 등)	통계청

### 5.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실적

- 2011년 이후 매년 이용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의견 수렴 및 조사에 반영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 격년마다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여 본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관련성, 접근성에 대하여 평가
- 통계진단 개선 수행 이력
  - 이용자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보도자료 요약 인포그래픽 디자인 및 레이아웃 개선으로 가독성 및 이용률 제고
    -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 2회,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회,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보도 자료 인포그래픽 전면개편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정보기술 활용
  - 2017년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산업 9차→10차, 직업 6차→7차)에 따른 4차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력에 해당되는 딥러닝 기술력의 혁신적 도입으로 2008년 이후 자료에 대해 시계열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 Ⅸ. 참고문헌

####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 통계청 표준통계분류
  - http://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9차, 10차)
    - 한국표준직업분류(5차, 6차, 7차)
    - 한국표준교육분류
  - OECD 서비스업 분류 기준
    - 서비스업 분류시 OECD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적용
      - 사업서비스업(Producer service), 배분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
      - 사업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배분 서비스업은 운수업, 통신업을 포함하며, 개인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업, 가사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구성

###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 국외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 미국의 CPS(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http://www.bls.gov/cps/
- 캐나다의 LFS(Labour Force Survey)
  http://www.statcan.gc.ca/bsolc/olc-cel/olc-cel?catno=71-001-X&lang=eng
- 프랑스의 Enquête Emploi en continu depuis 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sources/ope-enq-emploi-continu.htm http://www.insee.fr/fr/publications-et-services/irweb.asp?id=martra08
- 영국의 LFS(Labor Force Survey)
  http://www.statistics.gov.uk/statbase/Source.asp?vlnk=358&More=Y
  http://www.statistics.gov.uk/downloads/theme\_compendia/MD-Oct-2009/MD-Oct-2009.pdf
- 일본의 Employment Status Survey http://www.stat.go.jp/english/data/shugyou/2007/1.htm#1

#### 3. 기타 문헌

# □ 기타 문헌

- 지역별고용조사의 무응답 가중치 작성 방법
  - http://lib1.kostat.go.kr
- 지역별 고용조사의 가구가중치 산정 방안
  - http://lib1.kostat.go.kr